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가이드



I. 포항시 일반현황	7
II. 포항시 산업단지 일반현황	8
III. 중소기업 애로지원시책	11
1. 기업애로 지원분야	13
2. 금융 지원분야	23
3. 조세 감면	77
4. 기술 지원분야	81
5. 판로 지원분야	103
6.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분야	123
7. 교육 지원분야	153
8. 인력 지원분야	177
IV. 기관단체별 중소기업지원시책	191
V. 중소기업지원 유관 기관단체 현황	197



포항시 일반현황

I

포항시 산업단지 일반현황

II

중소기업 애로지원시책

III

기관단체별 중소기업지원시책

IV

중소기업지원 유관 기관단체 현황

V



I. 포항시 일반현황

연혁

- 1949. 8. 15 포항시로 승격
- 1995. 1. 1 영일군과 통합 도농 복합형 포항시 출범

인구 (15. 2월말 기준)

- 524,634명(전국의 1.02%, 경북의 19.41%)

면적

- 1,129km²(전 국토의 1.1%) 해안선 204km

행정구역

- 2구 4읍 10면 15동(29개 읍면동)

예산규모('16 당초예산 기준)

- 1조 4,193억원(일반 11,802, 특별 2,391)

지역 내 총생산(13년 기준)

- 17조 506억원(1인당 33,555천원)

수출입액(15년 기준)

- 수출액 75억불, 수입액 62억불

II. 포항시 산업단지 일반현황

(단위 : 천㎡, 개)

구 분		면 적	입주사	지정일자	조성기간	비고
총 계		38,248	394			
POSCO		9,070	1	'75. 6.23	'70.4 ~ 2020	
포항 철강 관리 공단	소 계	13,172	344			
	1단지	3,930	78	'67. 7.21	'70.4 ~ 72.3	
	2단지	3,996	100	'75. 6.23	'77.8 ~ 92.2	
	3단지	2,611	74	'91. 7. 5	'90.4 ~ 94.12	
	4단지	2,047	88	'02. 1.24	'02. 1 ~ 06. 9	
	청림지구	588	4	'75. 6.23	'74. 4 ~ 77.10	
청하농공단지		청림지구	19	'89. 11. 21	'89.12 ~ 90.12	
영일만 배후 단지	소 계	6,327	21			
	1일반산단	980	9	'04. 1.29	'04. 1 ~ 13.12	
	2일반산단	719	6	'05.10.17	'05.10 ~ 11. 5	
	3일반산단	197	0	'10.11.19	'11. 1 ~ 12. 8	
	4일반산단	4,183	1	'02. 1. 24	'02. 1 ~	조성중
	용한1지구	99	1		'95. 1 ~ 00.12	
	용한2지구	149	4	'08. 9.22	'07. 3 ~ 10.12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6,203		'09. 9.30	'09. 9 ~ 19. 9	조성중
경제자유구역		1,459		2008. 5. 6	2008. ~ 2020	조성중
광명일반산업단지		714	9	'10.10. 5	'10.10 ~ 16. 6	조성중
신흥일반산업단지		112		'10. 6. 1	'10. 6 ~ 16.12	조성중
구룡포일반산업단지		995		'10. 9.21	'10. 9 ~ 16. 6	조성중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일반현황

- 위 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
- 조성면적 : 6,119,000㎡(1단계 : 2,385, 2단계 : 3,734)
- 사 업 비 : 7,360억원
- 시 행 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유치업종 : 철강, 기계, 자동차, 선박부품, 에너지/IT

추진현황

- '09. 09. 30 :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 '13. 12. 23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 '14. 08. 28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14. 10. 14 : 공사착공(1단계)
- '15. 09. 04 : 기공식

향후계획

- '16. 하반기 : 산업시설용지 분양계획 및 2단계 공사착공
- '16. 12월 : 1단계 공사준공
- '19. 09월 : 2단계 공사준공



중소기업 애로지원시책

포항시 일반현황

I

포항시 산업단지 일반현황

II

III

기관단체별 중소기업지원시책

IV

중소기업지원 유관 기관단체 현황

V



1. 기업애로 지원분야

1-1 기업애로지원단 운영	15
1-2 기업애로상담관 운영	16
1-3 각종 애로신고센터 운영	18
1-4 애로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19
1-5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적극 창출	21



1-1 기업애로지원단 운영

- ★ 기업애로 파악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업애로지원단」 운영으로 기업현장 맞춤형 행정 추진
- ★ 중소기업의 자금 · 기술 · 판매 · 경영 등 종합적인 컨설팅 및 플랫폼 역할로 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배경

- 행정과 기업의 친밀한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친기업 정서 함양
- 기업경영에 따른 밀착 행정지원으로 진정한 기업지원 분위기 조성
- 실질적 기업애로사항 적극적 해결로 행정 신뢰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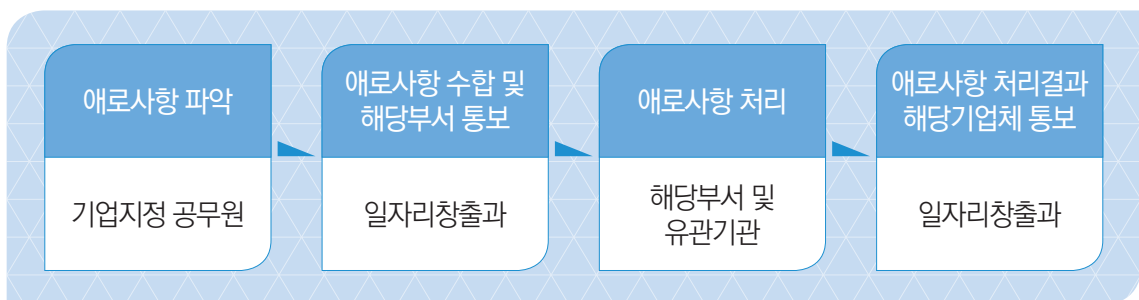
지정현황

- 기업체 수 : 570개 업체(종사자 6인 이상)
- 공무원 수 : 547명(5,6급 중심) - 지원자 113명

운영계획

- 매월 담당기업체 방문 및 정기적인 전화 상담
 -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기업경영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결과 보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시책 홍보

활동 및 처리요령



1-2 기업애로상담관 운영

- ★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경영·세무·회계 등의 애로사항을 전문인력(변호사·회계사·관세사 등)무료상담을 통한 해결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상담관 위촉현황

- 위촉인원 : 24명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직업상담사, 중소기업지원기관 등
- 위촉기간 : 2015. 3. ~ 2017. 3. (임기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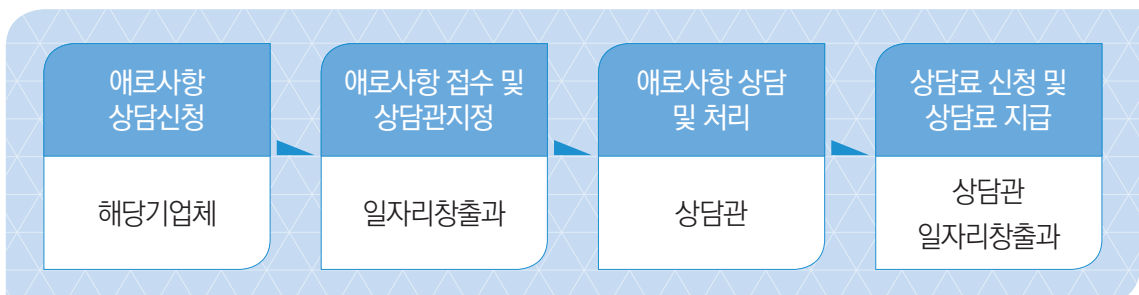
주요상담 민원

- 법률, 세무회계, 관세무역, 경영상담, 특허, 실용신안 등
- 공장설립(창업, 이전, 증축) 민원, 고용 및 인력채용, 노무관리
- 정책자금 및 기업 기반시설(도로, 교통, 전기, 용수 등) 관련

운영방침

- 매월 1회 또는 수시「기업애로 상담의 날」지정 운영
- 경영, 기술, 법률 등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업애로 사항을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통하여 신속해결 지원
 - 「기업애로지원단」과 연계하여 협력체계 구축 운영

처리체계



포항시 기업애로 상담관 명단

(위촉기간 : 2015. 2. 27. ~ 2017. 2. 26.)

직 위	소 속	성 명	연 락 처		주 소	비고
			전 화	FAX		
변호사	김상태변호사	김상태	T 254-7300 CP 010-5152-4026	254-7303	장성동 울정빌딩305호	
변호사	법무법인 일월	김정욱	T 251-0101 CP 010-8999-5583	246-9912	신흥동 861-1	
법무사	우리법무사	김원규	T 253-9001~2 CP 010-2787-6889	254-9007	장성동 1497-10	
법무사	김진솔법무사	김진솔	T 254-2002 CP 010-6507-2002	254-2707	덕산동 115-14	
공인회계사	인성회계법인	정기원	T 232-1201 CP 010-4522-7516	232-1204	덕수동 46-3	
공인회계사	대주회계법인	정태진	T 231-9100 CP 010-2535-5884	231-9101	신흥동 809-7	
공인회계사	대주회계법인	최호성	T 231-0600 CP 010-8522-5938	231-9772	신흥동 809-7	
세무사	배성철세무회계사무소	배성철	T 243-8876 CP 010-5515-8876	244-8876	덕수동 54-27 2층	
세무사	삼부세무회계사무소	김미경	T 248-6308 CP 010-2533-6308	248-6309	덕수동 46-11	
관세사	한일관세법인	류한역	T 244-9570 CP 010-4535-9570	244-9571	항구동 98-1	
RIST 수석연구원	RIST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김광일	T 279-6791 CP 010-9367-5368	279-6888	효자동 산32	
RIST 수석연구원	RIST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이종주	T 279-6583 CP 010-9373-9016	279-6179	효자동 산32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제니스	김흥년	T 277-0119 CP 010-3350-8800	277-2224	대잠동 968-1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알파	김태진	T 274-4555 CP 010-6545-3545	274-8656	대잠동936-10 새론빌딩501호	
경영지도사	(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조재룡	T 246-6887 CP 010-3521-6473	246-6888	대이로55 농협2층202호	
경영지도사	(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이종무	T 246-6887 CP 010-3810-4001	246-6888	대이로55 농협2층202호	
변리사	해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영대	T 255-6644 CP 010-9976-0958	255-6464	장성동1370-4 자유빌딩5층	
기술거래사 (특허컨설턴트)	경북지식재산센터	김정희	T 274-5533 CP 010-3176-3362	274-7224	상도동10-2	
직업상담사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최병철	T 278-5140 CP 010-2214-8599	070-8677-2059	대잠동 1002 태길빌딩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재)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장	안성완	T 275-2967 CP 010-3821-9610	275-2968	해도동 232-7	
경북신용보증재단 동부지점	경북신용보증재단 동부지점 차장	정석원	T 276-1879 CP 010-8569-3557	283-2704	해도동 232-7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부장	시호문	T 223-2042 CP 010-3327-1422	223-2049	지곡동 테크노파크1층	
기업은행 포항남부지점	기업은행 포항남부지점 팀장	김재현	T 281-1658(310) CP 010-8181-0217	050-075-0280	포스코대로 369	
관세사	임도관세사	이원식	T 244-1161 CP 010-6523-6330	244-1163	동빈1가 74-23	

1-3 각종 애로신고센터 운영

대구경북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

- 일선 행정관청의 부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신고
- 계약·입찰·환경·노동 관련 등 기업 불편사항 신고

중소기업 금융애로 대구경북 신고센터

- 중소기업 금융관련 애로 접수
- 접수된 애로사항 금융감독원 전달

대구경북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센터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업무지원
- 중소기업과 구매담당자의 현장애로 파악 및 개선조치

대구경북 무역구제지원센터

- 불공정무역행위 등 무역피해 중소기업 구제
-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상담 및 안내

건의접수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 당면 애로 및 정책과제 발굴을 통한지역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건의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의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용산동 268-5) 대구기업명품관 3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524-2110, 팩스 053-524-2117, 524-2504

1-4 애로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업사랑방 운영

- 전문자문위원 인력 POOL의 체계적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상담 및 현장애로 기술 지원, 다양한 사업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애로 사항 조기 해결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자문위원 : 98명(경영자문 85명, 외국어자문 4개 분야 13명)
- 주요내용
 - 경영 및 산업현장기술자문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접수 및 추천, 사후관리
 - 벤처기업 육성자금 접수 및 추천, 사후관리
 -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천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상시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무역관련 외국어 통번역 지원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능력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지원언어
 - 일반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독일어)
 - 특수언어(포르투갈어, 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등)
- 지원내용
 - 번역지원 : 수출 관련 번역이 필요한 제반문서
 - 통역지원 : 바이어 내방 시 현장통역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

-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교육니즈를 파악하여 경영, 품질, 기술, 세무회계 등 신지식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혁신 및 생산성 향상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사업내용
 - 집합교육 : 경영일반, 직무교육, 품질, 기술, 회계 등 강좌개설 후 교육시행
 - 찾아가는 현장교육 : 업체가 원하는 교육 현장에서 실시

- 지원내용
 - 집합교육 : 전액무료(교육참가비)
 - 찾아가는 현장교육 : 강사료, 교재비, 현수막 등 지원
- 진행절차
 - 집합교육 : 교육계획수립 → 교육생모집 → 교육시행
 - 찾아가는 현장교육 : 업체모집 및 신청접수(희망일시, 과정, 인원)→교육시행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 제품의 고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 함양으로 기업이미지 제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농·수·축산, 임업 생산사업자 및 관련 단체
- 지원분야 : 시각디자인(카다로그, 브로슈어), 기업CI, 제품BI, 포장디자인 개발 등
- 지원내용
 - 총 개발비의 85%이내(300만원 내외) 지원
 - 업체 자부담분 15% 정도
- 참여방법 : 공고(진흥원) → 접수 → 심사 → 선발 → 사업참여

기업혁신 종합진단 및 컨설팅

-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분야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자생력 확보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분야 : 기업혁신 종합진단 및 컨설팅(경영혁신, 생산성 향상, 기타)
- 지원비율 : 총 컨설팅비의 85%(업체부담 15%)
- 지원규모 : 도내 5개업체 정도
- 사업내용
 - 기업혁신 종합진단
 - 진단방법 : 현장관찰, 설문지, 인터뷰, 문서리뷰 등
 - 진단내용 : 생산관리, 품질개선, 공정개선, 현장개선, 생산원가관리 등
기업 전반에 대한 경영혁신 및 생산성 향상 분야
 - 컨설팅
 - 종합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 및 기술 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신청방법 : 공고(진흥원) → 접수 → 심사 → 선발 → 사업참여

1-5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적극 창출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구인·구직 상담, 취업지원, 사후관리에 이르는 취업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정 최우선 과제인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취업 성공률 제고
- 일대일 구인·구직상담, 현장방문상담, 취업교육, 잡매칭 채용면접 및 경북일자리
알림e(www.gbjob.kr) 사업 등을 운영

- 사업기간 : 년 중
- 규 모 : 60평 정도
- 근무인원 : 8명(센터장 1, 직업상담사7(구미4, 포항1, 안동2))
- 사업내용
 - 취업지원 : 구직상담, 기업정보 제공, 동행면접,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
 - 고용지원 : 구인상담, 맞춤형 인력 제공, 채용지원사업, 일자리발굴 등
 - 취업역량강화사업 : 취업교육, 세미나·특강, 입사서류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 일자리정보망 운영 : 경북일자리알림e(www.gbjob.kr)
 - 기타사업 : 채용수요 조사, 맞춤형 구인·구직 채용면접 만남의 장 개최 등
 - 상담실 및 잡카페 운영

청년실업긴급구조대 운영

- 국가적 이슈인 '청년고용절벽 문제' 완화를 목적으로 일자리창출단에 「청년실업 긴급구조대」
설치(15.8.20)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TF.

- 사업기간 : 2016. 01. ~ 12.
- 운영기관 : 경북일자리종합센터
- 주요내용
 - 구인·구직고객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매칭자료 활용
 - 구인 기업 근로환경, 구직자 성향 등 고객 특성관리
 - 인력수급 애로기업 진단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상시 구인애로(조기퇴사 포함)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 개선을 통한 생산유발효과 등 수익성 분석 등
 -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분기별 개최
 - 「청년 카」운영 등 현장위주 취업상담 및 진로코칭 강화

경북청년 해외취업지원 활성화 사업

-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고용절벽 문제' 완화를 목적으로 대학등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해외취업 지원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16. 01. ~ 12.
-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청년
- 대상기업 : (1차)한인기업(해외자문위원, 한상CEO), (2차)외국기업
- 지원내용
 -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운영
 - 구인기업 DB구축, 비자발급, 출국 및 위업정착 행정지원
 - 취업성공 시 항공료, 보험료, 현지정착비 등
- 추진체계
 - 센터 : 해외구인기업 정보망구축, 연수계획 심사, 비자발급 등 행정지원
 - 대학 : 학생모집, 연수계획수립 및 연수실시, 취업자 사후관리
 - 도 : 통상주재관 · 해외자문위원 DB제공, 사업비지원

2. 금융 지원분야

2-1	포항시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25
2-2	경상북도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26
2-3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지원	27
2-4	포항시투자유치기업 및 보조금 지원	28
2-5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29
2-6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30
2-7	노란우산 공제(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31
2-8	기업보증 공제	32
2-9	파란우산 공제(중소기업 손해공제사업)	33
2-10	중소기업 PL단체보험 가입지원	34
2-11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증지원	35
2-12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원	41
2-13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원	43
2-14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자금(공통사항)	48
2-15	창업기업 자금지원	50
2-16	재창업 자금지원	52
2-17	구조개선전용 자금지원	54
2-18	사업전환 지원자금	55
2-19	무역조정 지원자금	57
2-20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지원	58
2-21	신성장기반 자금지원	59
2-22	협동화사업 자금지원	62
2-23	협업사업 자금지원	64
2-24	긴급경영안정 자금지원	65
2-25	투융자복합금융 지원자금	68
2-26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70
2-27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71
2-28	수출인큐베이터	73
2-29	자금지원	75



2-1 포항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 포항시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 융자신청일 현재 포항시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 건설업 면허(일반, 전문)를 보유한 건설업체
 -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 확인서를 보유한 벤처업체

융자조건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우대업체 6억원)
 - ※ 매출에 따라 차등지원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율을 감한 금리
- 이자지원 : 1년간 3%(우대업체 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 2016. 12. 31.(자금 소진 시까지)수시 접수
- 접 수 처 : 포항시청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담당(270-3924)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포항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참고

지원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기업) ⇒ 접수 및 지원결정(포항시) ⇒ 대출실행(은행)

대출은행 : 10개 은행

- 대구, 우리, 기업, 국민, 신한, KEB하나, 부산, 농협, 한국산업, 스탠다드차타드
- ※ 2016년 포항시 확보 예산액 30억원

2-2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지원규모 : 166억원(도 전체 2,200억원)

- 설자금 : 66억원(40%) ● 추석자금 : 66억원(40%) ● 수시분 : 34억원(20%)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포항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참고

융자지원 대상

- 포항시 내 본사 ·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체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수업, 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 자동차정비업)

이차보전 : 대출금리에서 3%, 1년

융자조건 및 한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융자취급 은행별로 기업대출금리 적용
-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추천당해년도에 한하며, 대출기한 연장 불가)
 -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 일반업체 : 3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 일반업체 융자금액은 연간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우대업체 : 5억원 이내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까지 추천)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중기청장 포함)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 산업평화대상 · 고용증진대상 · 신성장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시니어친화기업 · 정규직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가족친화인증업체(최근 3년 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SILLARIAN' 선정 업체
 -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 '경북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2-3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규모

- 1,300억원(상반기 900억원, 하반기 400억원)

융자한도

- 업체당 11억원(대출금리 2.7% 변동)
 - 시설 8억, 3% 8년 / 운전 3억, 3% 3년

융자지원사업 범위

- 시설자금
 - 사업장 신축 및 부지 매입비 (창업 후 7년 이하 기업)
 - 부지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함
 - 사업장(건축물) 매입비
 - 법원(또는 자산관리공사, 은행 등)의 경매를 통한 매입만 해당됨
 -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 후 5년 이하 기업)
 - 생산설비, 물류시설, 시험검사장비, 연구개발 장비 등의 신규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중고 시설 제외)
 - 기존 사업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시설투자 자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
 - 타 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장 신축 및 생산시설 신규 설치(구입)에 필요한 자금
- 운전자금(시설자금과 반드시 연계하여 신청)
 - 시설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창업비용, 시제품 생산, 원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신청 및 접수

- 접수시기 : 2016. 1. ~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2-4 포항시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 임대료 감면
 -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1백만 달러 이상) : 100% 면제
 - 부품소재(5백만 달러 이상) : 100% 면제
 - 일반 제조업(5백만 달러 이상) : 75% 면제 (* 50년 범위 내)
- 경제자유구역
 - 입주자격 : 국내기업/외국인 지분 10% 이상
 - 법인세 · 소득세 : 3년간 100%, 2년간 50%
 - 취득세 : 면제
 - 재산세 : 10년간 100% 5년간 50%
 - 관세 등 : 자본재 5년간 면제
 - 임대료 : 부지가액 1%

국내기업

- 이전기업(수도권지역)
 - 대 상 : 본사 수도권 3년, 고용인원 30명 이상, 이전 후 고용인원 30명 이상 동일한 업종 영위,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 보조금 : 입지 30%, 설비투자 12%범위 내, 최대 60억원까지(국비)
- 신증설기업(경제협력권사업,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
 - 대 상 : 3년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10% 이상 고용 10억원 이상 투자 (중소 · 중견기업), 300억원 이상 투자(대기업)
 - 보조금 : 설비투자 12% 범위 내 최대 30억원까지

2-5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조건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
- 국내기업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며 신규고용인원 20명 이상

투자보조금

구분	고용보조금/ 교육보조금	현금지원	시설/이전보조금	대규모투자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 신규고용인원 20명 초과 • 1명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3억원 한도)	• 입지 및 시설 보조금 등 • 투자금액의 20% 이내 지원	• 30억원 초과 설비금액 3%범위 내 50억원 한도	• 3억달러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1,500명 이상 • 시의회 동의 후 초과 지원
국내 기업	• 신규고용인원 20명 초과 • 1명당 월 30만원 최대 6개월 (1억원 한도)	• 입지 및 시설 보조금 • 투자금액의 20% 이내 지원	• 상시고용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 5억원 한도 (본사이전) •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5% 범위 내 50억원 한도 (공장이전)	• 500억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시의회 동의 후 초과 지원

2-6 중소기업 공제사업자금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 가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가입대상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업종(업력 관계없음)
 - 다만, 담배, 알코올음료 중개업, 주점업, 댄스홀, 도박장운영업, 안마시술소는 제외

대출종류(월부금 4회 이상 납부 후부터 4가지 대출 동시 이용 가능)

구분	제1호 대출 (부도어음 대출)	제2호 대출 (어음수표대출)	3호 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4호 대출 (매출채권보험 청구권담보대출)
대출 대상	거래상대방의 도산 등으로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 및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전자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외상매출채권대출
대출 한도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신용 7배 이내)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신용 7배 이내)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신용 3배 이내)	부금잔액의 20배 이내
이자율	무이자	변동 4.55 ~ 9.3%	변동 4.55 ~ 9.7%	4.65%
대출 기간	3년 (6개월 거치 후 30개월 분할 상환)	180일 이내	1년 (연장 가능)	180일 이내
대출 조건	무담보, 무보증 (거래처 부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용, 담보	신용, 담보	신용보증기금 일석e조 보험 청구권 담보

※ 1호 대출은 대손보전준비금 10%, 2호 및 3호 대출은 대손보전준비금 1.0% 별도,

다만, 담보제공 약정시 대손보전준비금 0.1% 적용

※ 대출이율 및 한도는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2-7 노란우산 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사업목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 등의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 폐업·사망, 퇴임·노령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혜택(최고 125만원까지 절세)
- 채권자 압류에서 보호되는 안전한 자금
- 납부 부금 내 대출가능
- 상해보험 자동가입으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가입일로부터 2년)

가입대상 (*유흥업종은 제외)

-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가입기간: 가입 시부터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
 - 도소매 등 기타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

월 부 금

-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가입서류

-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청약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8 기업보증 공제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보증서를 그 동안 시장을 독점해왔던 민간보증보험사보다 저렴하게 발급하여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 가입대상
-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

지원내용

-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요구하는 '보증서'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심사를 통하여 저렴하게 온·오프라인 발급
 - 보증종류 : 공공조달 관련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금금보증, 이행지급보증

보증서 발급절차

- 상담 및 보증한도 안내 → 보증약정 신청 → 보증약정 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청약 → 청약심사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2-9 파란우산 공제(중소기업 손해공제사업)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화재, 배상책임 등 공제(보험)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제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상 및 불편을 해소

가입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장, 판매장, 사무실 등 시설 소유·임차자)

사업내용

- 화재공제 : 공장과 일반건물 등에 대한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
- 재산종합공제 : 화재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조업중단 피해 등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
- 영업배상책임공제 : 각종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장
- 근로자재해공제 : 사업주의 과실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담보

특징

- 본회와 협력 손해보험사와 제휴하여 사고·보상처리(삼성, LG, 현대 등 6개 보험사)
- 기존의 보험상품 대비 10~25% 저렴

2-10 중소기업 PL단체보험 가입지원

사업목적

-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해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책임(제조물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가입대상

- 완제품 제조업체, 원재료 · 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
 - 1차 생산물을 제외한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제품 제조자 및 수입업자 모두 가입대상. 승강기 설치 및 유지 · 보수, 전기관련 공사, 창호공사 등 완성작업도 해당

가입유형

-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국내, 해외),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

국내용

가입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기타
1사고당/총보상한도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임의설정)
자기부담금(1사고당)	최소 30만원 부터				

해외용

가입유형	“A”형	“B”형	“C”형	“D”형	기타
1사고당/총보상한도	U\$10만	U\$30만	U\$50만	U\$100만	(임의설정)
자기부담금(1사고당)	최소 U\$1,000 부터				

제도특징

- 보험사 직접 개별 가입 시 보다 최대 국내 28%, 해외 20% 보험료 저렴
 - ※ 장기가입자 및 각종 인증마크,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 보험료 추가 할인

2-11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신용보증제도

- 경영자의 경영능력, 사업성 및 수익성 등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

지원대상(전 업종 대상)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규모	업종	종업원 수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도·소매, 음식 및 기타 업종	10인 미만 5인 미만
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도·소매 및 서비스업	50인 미만 10인 미만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이 의한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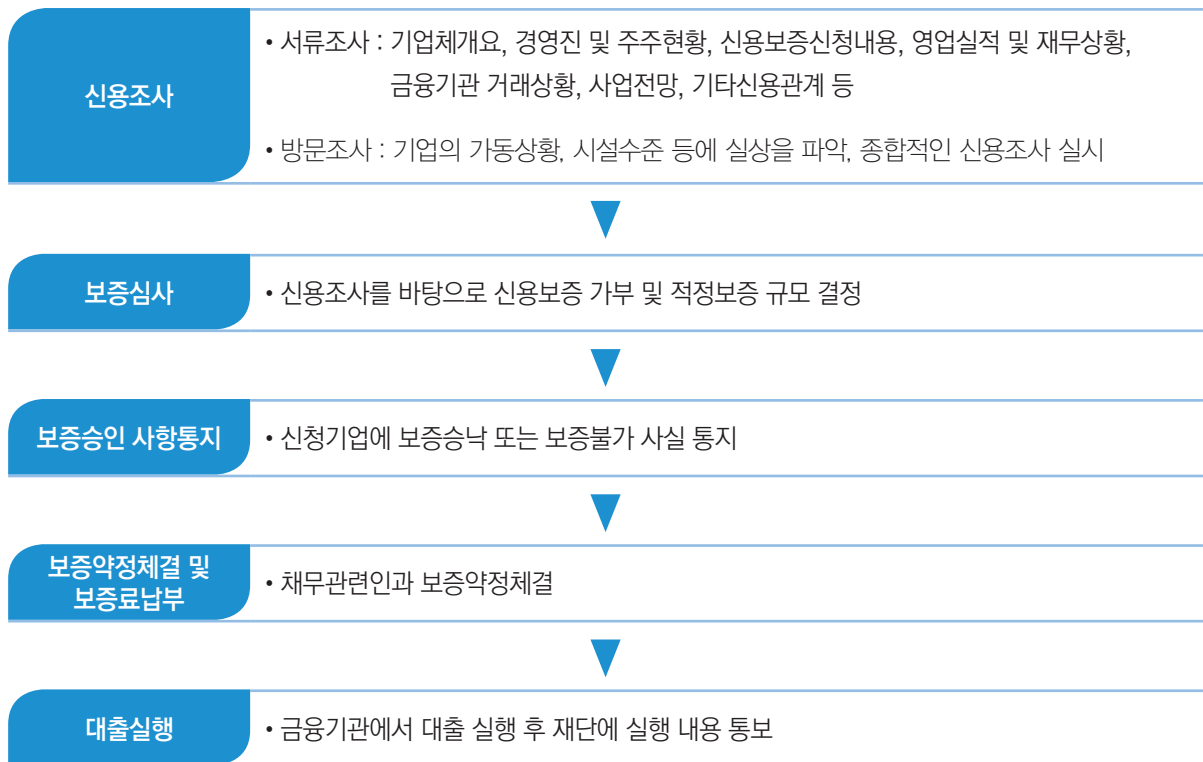
※ 보증금지 기업

-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재단 등에 손실을 입힌 기업 및 보증사고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된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부실자료 제출 기업
- 사업성 또는 보증지원의 타당성이 없거나 신용상태가 불량한 기업
- 소유부동산에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기업

※ 보증제한업종 : 사치성, 불건전 오락산업, 산업파급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업종

보증절차

보증상담	• 신청기업의 기초적인 내용 상담 후 보증가능성 검토 • 보증기준에 부합 할 경우 보증절차 안내 및 신청서류 교부
보증신청	• 신용보증신청서류 제출



보증종류

- **대출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할인어음, 당좌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일반은행)
- **비은행대출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할인어음, 당좌대출 등을 포함한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일반은행)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한 계약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할인어음, 당좌대출 등을 포함한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일반은행)
-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주고받는 지급어음, 받을 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여 드림으로써 기업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거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증제도
 - 받을어음보증, 지급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상거래 상대처)
- **지급보증의 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금융기관의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금융기관)
- **시설대여 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업자 등으로부터 기계, 기구 등의 시설을 대여 받는 경우 담보로 활용되는 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계약에 의해 시설대여업자 등에 부담하는 규정 손해금(중소기업진흥공단)
- **납세보증** :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지방세와 관련, 세무관서로부터 납세고지 유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와 지방세(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심사기준

- 업무의 효율성과 신청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보증신청금액에 따라 1차, 2차 심사로 진행

구 분	소액심사	일반심사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심사방법	소액심사 신용평가표	일반심사 신용평가
한도사정	세무서 신고 매출액 또는 실제 발생매출액 기준	세무서 신고매출액 기준

보증한도

구 분	사정금액/매출액 기준	비 고
제조업	연간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이외 업종	연간 매출액의 1/4 이내	
중소기업의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	연간 매출액의 1/3 이내	

※ 5천만원 이하 소액심사대상 보증의 경우에는 신고매출액이 아닌 실제발생매출액, 재정상태, 신용등급 등에 의한 소액보증금액 한도표에서 산출된 금액 기준으로 사정함.

- 시설자금 : 당해 시설 소요금액의 100% 이내에서 사정
- 동일 기업 당 보증한도 : 동일 기업 당 보증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하여 8억원을 초과 할 수 없음.
단,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기 사정금액에서 다른 신용보증 기관과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이행보증, 납세보증 제외)을 차감한 금액 범위 이내로 함.

보증료

- 보증료 : 보증료는 신용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하여 계산, 기준 보증료율은 연 1%를 기준으로 보증종류와 보증기간에 따라 최저 0.5% ~ 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 연체보증료 : 보증료 분할 납부시 적용,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료를 못 낼 경우 납부하여야 할 보증료의 연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부담하여야 함.
- 추가보증료 : 보증만기일(보통 대출만기일)에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이 있을 시 그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의 현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의 추가 보증료를 부담하여야 함.

중소기업 운전(시설)자금 보증

• 원재료의 구매, 생산, 판매활동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서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
- 보증한도 : 8억원 이내
 - 제조업(운전자금) : 당기매출액의 1/3 (4개월) 범위 내
 - 비제조업(운전자금) : 당기매출액의 1/4 (3개월) 범위 내
 - 시설자금 : 생산시설의 도입, 설치에 필요한 자금 범위 내
- 상환기간
 - 운전자금 : 1년(1년 단위로 연장)
 - 시설자금 : 세법상 내용연수 이내
- 취급금융기관 : 시중은행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Tel 054-283-2730)

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 사업규모가 작은 지역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서 사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일반기업 : 2천만원
 - 우대기업 : 5천만원 이내
 - 고용창출 우수기업 : 신청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업체
 - 장애인기업 :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 상환기간 및 방법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취급금융기관 : 농협, 대구, 기업, 하나, 씨티은행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Tel 054-283-2730)

보증부 서민대출 보증

-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계층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보증지원
 - 지원대상 :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 농림어업인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 담보부 창업자금 : 5천만원 이내
 - 고금리 대출 대환자금 : 3천만원 이내
 - 기타자금 : 2천만원 이내
 - 상환기간 : 5년 이내
 - 취급금융기관 : 단위농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 대출금리 : 연 8% ~ 연 10% 이내
 - 신청방법 :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신청

보증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육성자금 특례보증

-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운전자금 보증지원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착한 가격업소
 - 보증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취급금융기관 : 농협은행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Tel 054-283-2730)

협동조합 특례보증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제공,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협동조합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보증지원
 - 지원대상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대상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대상기업
 - 보증한도 : 출자금의 1/2범위 이내에서 3천만원 이내(재단의 기존보증 포함 5천만원 이내)
 - 상환기간 : 5년
 - 취급금융기관 : 시중은행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Tel 054-283-2730)

사회적기업 특별보증

- 취약계층에게 사회활동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운전 및 시설자금 보증지원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대상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2항」 대상기업
- 보증한도 : 4억원 이내(신보, 기보 및 재단의 기존보증금액 포함)
- 상환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취급금융기관 : 기업은행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Tel 054-283-2730)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보증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운전자금 보증지원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서 사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정책자금 : 70백만원 이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기업)
 - 일반자금 : 50백만원 이내
- 상환기간 : 5년
- 취급금융기관 :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Tel 054-283-2730)

2-12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원

보증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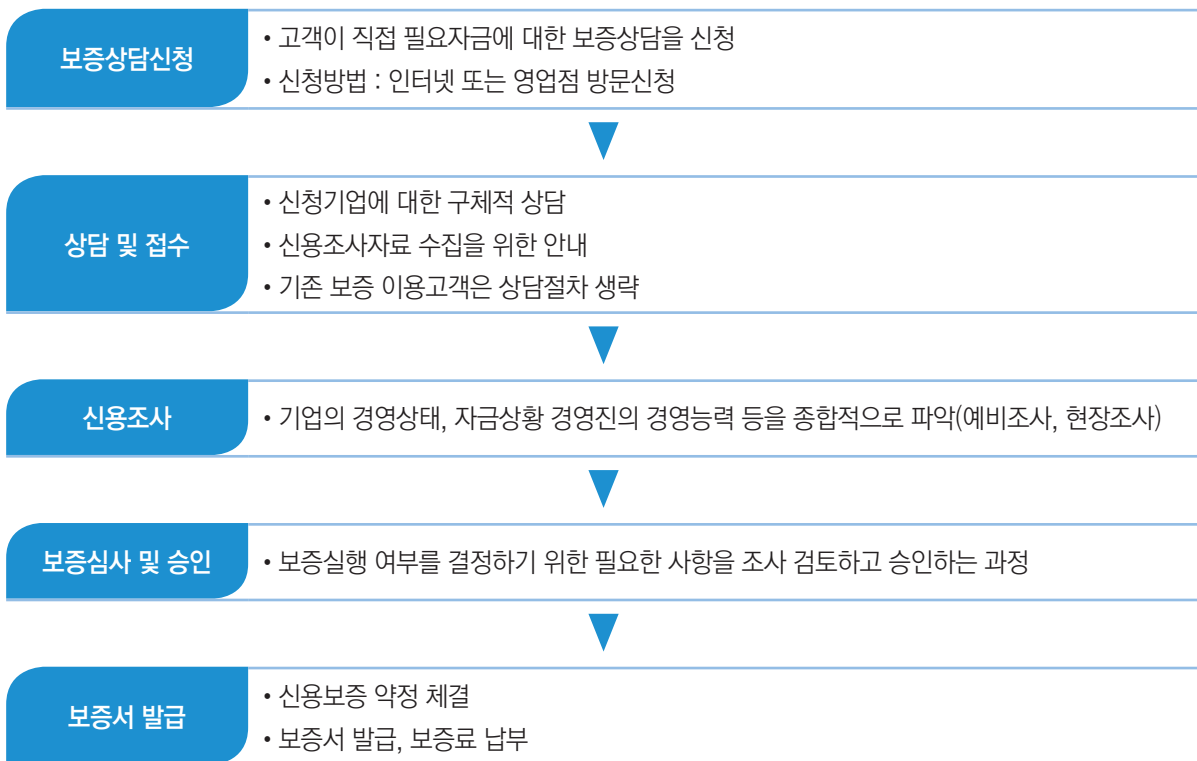
-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증종류

- 대출보증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 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 Network Loan, 할인어음, 설비자금, 기업행복카드보증, 각종기술개발자금 등
- 대지급보증의 보증 : 은행이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향후 은행의 대지급으로 발생한 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의 보증 등
- 사채보증 :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 할 때 원리금 지급 채무를 보증
 -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회사채로서
 - 상환기한이 2년 이상이고 발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
 -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
- 제2금융보증 : 기업이 제2금융회사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농수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호신용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 등으로부터 기계.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어 '07. 5. 15일부터 잠정적으로 취급 중단

-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상대기관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 시설대여회사, 공공법인, 정부출자기관, 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 **상거래담보용보증** :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절차



보증료

- **보증료** :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심사등급별 보증료율, 가산보증료율, 차감보증료율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용도 등의 변화에 연동하여 적용
- **보증한도** : 보증심사등급별 차등(30억원 ~ 70억원)
 -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은 조건에 따라 100억원까지 가능
- **보증료율** : 신용등급별 차등(0.5% ~ 3.0%)

2-13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원

보증개요

-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기술평가, 벤처, 이노비즈기업 인증, 중소기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보증대상기업

- 신기술사업 영위하는 중소기업 : 벤처, 이노비즈기업, 기술창조기업, 지식문화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 등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써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보증종류

- 대출 · 어음보증 · 이행보증 · 무역금융보증 등

보증한도 및 보증료

- 일반한도 기업 당 30억원
- 특별한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50억원, 시설자금보증 100억원
- 보증료 : 기업평가등급별 차등(연 0.5%~3.0%)

각종 보증 상품

종 류	지원대상	주요내용
시설자금특례보증	• 금융기관 등에서 취급하는 시설자금 대출금	• 보증비율 90% (전액해지조건은전액보증)
구매자 금융보증	• 기업 간 상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을 받는 기업	• 5억원 이하 소요자금 사정 특례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한도 우대보증	•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예정) 기업	• 지원한도 : 1명당 30~50백만원씩 최고 3억원 이내 지원 • 보증료 1.0% 고정요율 적용
그린하이테크 우대보증	• 녹색인증기업 우대보증 :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인증 보유 기업 • 녹색기술성 우수기업 우대보증 : BB등급 이상으로서 녹색기술력 판별표 충족기업	• 보증료 0.3~0.5%p 감면 • 녹색기술력 평가금액 추가 지원
예비스타 벤처기업 육성 우대보증	• 창업 후 3년 초과~7년 이내 벤처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재무등급 B0등급 이상 기업 • 당기매출액 대비 추정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기업	• 보증료 0.3%p 감면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 기술·산업융합을 진행 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업 중인 혁신형 중소기업	• 보증료 0.3%p 감면
고부가 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과 선도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공급계약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기업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 프로젝트 전주기에 걸쳐 제작자금 지원(용역공급 계약체결 전 기획·개발 초기 소요자금도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등에 대한 우대보증	• 혁신센터 입주기업 • 혁신센터 관련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하는 기업 • 창조경제타운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주체 • 위 지원대상 관련 예비창업자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 기술·경영컨설팅 우선지원 • 보증연계투자 지원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각종 보증 상품

종 류	지원대상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사업화지원 우대보증	-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실시권자 포함)을 사업화하는 기업 -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통한 매출이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추정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30%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보증료 0.2%p 감면 - 보증비율 90%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지식재산(IP) 인수를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식재산(IP) 인수자금을 융통함에 따른 금전채무	- 보증료 0.3%p 감면 - 보증비율 95%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지식재산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 (전용실시권자 포함)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지원한도 : 지식재산(IP) 가치금액 범위 내	- 보증료 0.3~0.5%p 감면 - 보증비율 90~95%
지방이전 중소기업 우대보증	주사업장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1.0% 고정보증료율 - 보증비율 90%
지방기술유망기업 우대보증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사업평가등급 우수 기업	- 보증료 0.3%p 감면 - 보증비율 90%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 우대보증	지역별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보증료 0.1%p 감면
기업인수보증	기업 인수 ·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기업인수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의 소요자금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증지원
유동화회사보증 (P-CBO)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술력 우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개발 및 사업화과정에서의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회사채 발행기회를 제공

각종 보증 상품

종 류	지원대상	주요내용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미래 창조 · 신성장동력 예비창업자 - 녹색 · 신성장동력 · 지식문화 · 첨단뿌리산업 영위 예정 예비창업자 - 지식재산권 보유, 창업교실 수료, 창업경진대회 수상 예비창업자 등	- 창업 준비단계에서 창업자금 지원 가능금액을 제시해주고, 창업 후 사전 제시금액 보증지원 - 보증비율 : 100%(전액보증) - 보증료 0.5%p 감면
청년창업 특례보증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창업 후 5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 보증비율 : 95% - 보증료 : 0.3% 고정요율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보증	- 우수기술창업기업 - 창업 후 1년 이내 법인기업으로, 기술사업 평가 등급 BBB등급 이상 - 전문가창업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법인기업으로, 교수 · 연구원 등 창업, 기술사업평가등급 A등급 이상	- 면제기간 : 보증서 발급 후 5년간 - 지원한도 - 우수기술창업기업 : 같은 기업 당 2억원 - 전문가창업기업 : 같은 기업 당 3억원 - 보증비율 : 85% 고정
기술창업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으로서 아래 해당기업 - 녹색성장창업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지식문화창업 : 지식문화산업 영위기업 - 이공계챌린저창업 :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인 기업 - 40 · 50창업 : 대표자가 만 40~55세이하이고,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기업 -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영위하는 기업 - 첨단 · 뿌리산업 : 첨단기술, 제품 확인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 지식재산권창업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화하거나 1년 이내 사업화 예정인 기업	- 보증비율 : 90% (단, 창업 후 1년 이내 100%) - 보증료 - 창업 후 1년 이내 : 0.5%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료율) - 창업 후 5년 이내 : 0.3%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료율)
지방소재 창업기업보증	창업 후 5년 이내 지방소재기술창업기업	보증금액 2억원 이하 우대보증 지정
R&D보증	R&D를 통해 개발 ·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 성장단계, R&D단계 등에 따라 부분연대보증 운용 - 보증비율 - 개발, 사업화준비단계: 95% 이내(업력 5년 이내 100%) - 사업화단계: 85% 이내 (5년 이내 R&D 성공판정과제 95%) - 보증료 : 0.3%p 감면
특허기술 가치평가 보증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지원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 (기업 당 최대 10억 한도)

각종 보증 상품

종 류	지원대상	주요내용
벤처창업교실 (무료)	기술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기술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자금조달전략, 세무·회계, 마케팅, 지식재산권, 사업계획서 작성 등 체계적인 기술창업 실무 교육 - 문의 : 창업성장부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강좌 (무료)	기보 거래 중인 새싹기업 (창업 후 2년 이내, 기보 보증금액 1억원 이하)의 CEO	- 창업초기기업의 안정적 사업기반 정착과 성공창업을 위해 세무·회계, 인사·노무, 기보 제도소개, CEO 특강 등 실무 위주의 창업 교육 - 문의 : 창업성장부
도약기업 CEO 전문강좌 (무료)	기보 거래 중인 창업 후 3~5년차 성장가능성 보유 우수기술 기업의 CEO	- 창업 후 죽음의 계곡 (Death-Valley)을 극복하고 도약단계에 있는 우수기술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EO역량강화 전문교육 - 문의 : 창업성장부
기술·경영 컨설팅 (무료)	기보 거래 중인 기업 또는 거래 예정인 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역량 및 생존력 강화를 위해 자금, 재무관리, 마케팅 등 분야에서 창업컨설팅, 진단컨설팅, 전문컨설팅, 전문심화컨설팅 등 수행 - 문의 : 창업성장부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무료)	- 신청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단, 진단제외업종 또는 진단신청 제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보 거래 중으로 구조적 경영애로 중소기업 중 은행 추천기업 - 기보 거래 중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 병원 건강관리시스템과 같이 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처방→맞춤형치유 방식의 「문제해결식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영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보, 중기청, 신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공동으로 시행 중인 정부시책사업 - 문의 : 창업성장부

2-14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자금(공통사항)

용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지원)
전략산업 : 녹색 ·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 · 소재산업, 지역전략 · 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자금별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
- 용자제한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 법정관리 · 기업회생신청 ·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 · 폐업중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 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융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 · 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융자신청 접수 절차

- 월별 상시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신청 필요)

2-15 창업기업 자금지원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포함)
 - (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적용
- 대출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 직접대출(단,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 당 1억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 (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절차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신청 → 접수, 평가 → 융자결정 → 대출

2-16 재창업 자금지원

지원대상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 · 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단, 재창업자금 중 융환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 ① 중기청 미래부 재창업 R&D자금 승인자(기업)
 -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 ④ 특허 · 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또는 예정자(기업)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단,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중진공 직접대출)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9년 이내, 운전 6년 이내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사업장(경 · 공매) 확보자금

지원절차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신청 → 접수, 평가 → 융자결정 → 교육 → 대출

2-17 구조개선전용 자금지원

지원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①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진단 기업
 - ②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기업
 - ③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8년 이내, 운전 5년 이내
- 지원범위 :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지원절차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신청 → 접수, 평가 → 용자결정 → 교육 → 대출

2-18 사업전환 지원자금

사업목적

-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지원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별도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창업과는 구별됨)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은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 ·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대상

-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자
- 사업전환 대상이 되는 이전 업종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 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자
- 새로이 영위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가 아닐 것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 가스 · 전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단,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업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 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은 매출액 한도(150%이내) 예외 적용
- ◎ 대출기간 : 시설 8년 이내, 운전 5년 이내
-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지원절차

-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신청 → 접수, 평가 → 융자결정 → 대출

2-19 무역조정 지원자금

사업목적

-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회복 지원

지원대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단,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매출액 한도(150%이내) 예외 적용
- 대출기간 : 시설 8년 이내, 운전 5년 이내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지원절차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신청 → 접수, 평가 → 융자결정 → 대출

2-20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조성기업을 육성

융자규모 : 3,000억원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 - Biz, Main - 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정 기업 (특허청 인증)
 -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단,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매출액 한도(150%이내) 예외 적용
- 대출기간 : 시설 8년 이내, 운전 5년 이내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2-21 신성장기반 자금지원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신청대상
- 신성장기반 및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외
-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업지원, 기초제조기업 성장,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기반)『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 자금으로 융자)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기초제조기업성장) 업력 4년 이상,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초소재형 산업 : 섬유제품(의류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 가공조립형 산업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산업형태별 제조업 분류기준

-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11 ~ '14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단, 최근 3년의 시작 및 최종연도의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청년(만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단,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에 한함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연간 10억원(운전자금 연간 2억원)
 -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지원범위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혁신형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전용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 자금'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 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2-22 협동화사업 자금지원

사업목적

-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공동기술개발 및 원자재공동구매 등의 협업화를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 추진 요건

- 일정 수(3개 업체) 이상 업체가 참여, 참여업체 간 사업추진 의사 일치
- 신망 있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정
- 중소기업구조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수립

신청대상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참가업체 자격 및 승인가준

- 일정한 비율의 자기자금부담능력이 있을 것
- 주된 영위업종이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한 융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일 것
-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한 융자제외 대상인 기업이 아닐 것
(단, 업종별 융자제한부채비율은 실천계획승인 신청 당시 기준)
-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가 참가업체수의 1/2 이내일 것
(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에 포함하지 아니함)
- 실천계획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취소의 사유가 당해업체에 있지 않을 때는 가능)
- 동일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1개 업체만 동일한 협동화사업장에 참가할 수 있음
- 기존의 협동화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도 새로이 추진코자 하는 타협동화사업에 참가할 수 있음

협동화사업의 유형

구분	사업내용	추진유형사례
집단화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 제조공장집단화 - 시험연구실집단화 - IT업체사무실집단화
공동화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의 생산 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물류창고, 제품 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 공동제조공장 - 공동제품전시판매장 - 공동물류창고 - 공동폐수처리시설 - 공동시험검사시설
협업화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활동,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정보수집, 해외시장진출, 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 기업간 컨소시엄사업 - 공동제품개발 - 공동상표개발 - 원자재공동구매 - 공동인터넷사이트개발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단,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지원한도
 - 시설자금 : 70억원
 - * 협동화 ·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은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이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운전자금 : 5억원(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업화 승인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협동화 · 협업사업 승인기업의 지원자금은 융자잔액 기준 및 매출액 한도(융자잔액 수도권 45억원 / 지방 50억원, 매출액의 150%) 예외 적용. 단, 잔액기준 한도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2-23 협업사업 자금지원

사업목적

- ◎ 2개 이상 중소기업이 R&D · 제조 · 판매 등 전문역량을 상호 보완 · 협력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 생산 · 판매 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대상

- ◎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기능 등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 · 생산 · 판매하려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지원내용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단,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 지원한도
 - 시설자금 : 70억원
 - * 협동화 ·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은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이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운전자금 : 5억원(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업화 승인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협동화 · 협업사업 승인기업의 지원자금은 융자잔액 기준 및 매출액 한도(융자잔액 수도권 45억원 / 지방 50억원, 매출액의 150%) 예외 적용. 단, 잔액기준 한도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2-24 긴급경영안정 자금지원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 (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
(단,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가능)

지원내용

-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지원범위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수출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로 직전년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 기술유출 피해기업
- 부당하도급 피해로 공정위의 심결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
- 다음에 해당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피해 중소 병 · 의원 및 중소기업

- * 보건복지부 발표 메르스환자 발생 및 경유 병 · 의원, 동 병 · 의원이 소재한 지자체 (시, 군, 구) 내 병 · 의원
- 전년동월(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병 · 의원
- * 메르스 피해 업종(관광, 여행, 숙박, 공연) 영위 중소기업 중 전년동월(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 *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수출계약서가 있는 수출예정기업 포함) 중 메르스 관련 피해로 전년동월(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 당 3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 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 환어음 매입 시 정산
-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지원범위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2-25 투융자복합금융 지원자금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 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지원내용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금리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40%를 한도로 함(다만,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 (대출기간 동안 고정)
 - * 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 이익연동이자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자는 면제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성장공유형 대출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2-26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사업개요

- 고성장기업의 창의적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단, 수도권 이외 지역중소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 근로자 수가 최근 3년의 시작 및 최종 연도에 10인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영위 기업

지원규모 및 내용 : 250억원, 약 500개사 내외 선정

- 기업의 자율적 구성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 지원
(수출교육, 전시회, 해외마케팅 인력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등)

매출액	지원금액	지원비율	협약기간
100억원 미만 기업	최대 1억원	90%	최대 1년 6개월 이내
100억원~300억원미만 기업		70%	
300억원 이상 기업		50%	

2-27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사업개요

- 수출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부의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우선참여 또는 우대 지원(3년 졸업제)하여 수출 5,000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자격 : 수출 5백만불 이상 중소기업)

기업체별 한도

- 전용 프로그램 : 100백만원/3년(단, 연간한도는 50백만원)
- 연계 프로그램 : 1억원 규모 전용 바우처 제공(전용프로그램 지원금과 별도)

지원 내용

- 250억원, 약 500개사 내외 선정
- 전용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한도(백만원)	비율(%)
기초진단 및 시장조사	① (필수)마케팅역량진단	3	100
	②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20	50
해외시장개척활동	③ 글로벌 브랜드 개발	50	50
	④ 해외전시회 참가	10	50
	⑤ 해외 홈쇼핑(전시회) 동영상 제작	20	50
	⑥ 자유투자 마케팅 프로그램	20	50
홍보디자인개발	⑦ 제품 및 외국어 포장디자인	30	50
해외시장정보제공	⑧ 글로벌 경영컨설팅	50	50

- 연계 프로그램

사업명	우대사항	지원한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우선 선정	2천만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우선 선정	인증비용의 40%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지원	가점(5점) 부여* 단, 공실규모 및 신청기업 수 등을 감안 우선 입주 추진	임대료 지원 1년차 80%
무역촉진단 파견지원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가점(6점) 부여	사업별 상이

◎ 기타연계 프로그램

사업명	우대사항
수출 R&D 연계지원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신청자격 부여, 가점부여, 참여횟수 제한(4회) 예외 인정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우대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 대출한도 확대 : 10억원→30억원 • 기업은행 : 대출한도 우대, 금리우대, 대출기간 연장 우대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 사업우대 지원	국내에서 R&D 기술자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외국전문 기술인력 채용 지원(체재비, 항공료, 인력 발굴 등)
절충교역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 장비 등을 구매 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 등을 이전 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경영정보화 지원사업	가점(2점) 부여
AEO 인증제도	AEO 인증제도 교육 및 관세청 컨설팅 가점부여

2-28 수출인큐베이터

지원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중소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및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 사무공간제공 : 현지법인설립 및 수출활동을 위한 개별 사무공간 제공
- 전문컨설팅 지원 : 전문가에 의한 시장정보 수집, 분석제공, 법률, 회계 자문
- 중소기업 수출사랑방 운영 : 단기로 현지를 방문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임시 사무공간 및 상담 장소 제공
- 유관기관 연계지원 : KOTRA무역관, 수출보험공사 등 현지 수출유관기관 연계지원
- 서비스 및 행정지원 : 현지진출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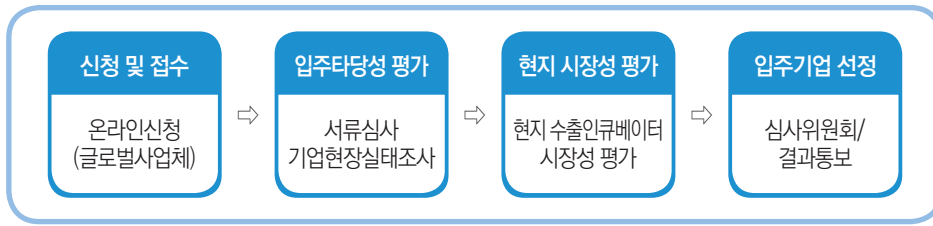
	중국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인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호치민	하노이	도쿄		뉴델리
입주규모	21	26	14	10	7	12	11	15	10	16

지역	미국				멕시코	브라질	독일	러시아	UAE	카자흐스탄
	뉴욕	LA	워싱턴 D.C	시카고	멕시코 시티	상파울로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두바이	알마티
입주규모	23	23	12	18	10	10	15	10	6	7

업체부담금

- 입주보증금: 500만원, 월 임대료 부담(입주 1년차 기준) : 입주업체별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 광저우, 청두, 호치민, 시안 (10만원 내외) 시카고, 뉴욕, 상파울로, 멕시코시티(15만원 내외)
 - 워싱턴, LA, 프랑크푸르트, 도쿄,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뉴델리, 두바이(20만원 내외)
 - 모스크바(45만원 내외)
- 전화요금, 전기 등 관리비 실비 부담

입주기업 선정절차



2-29 자금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도내 창업 중소기업 및 기존 기업의 생산설비자동화, 시설현대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여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규모 : 1,300억원(금리 2.7% 변동금리)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등
- 지원금액 : 업체당 11억원 이내(시설 8, 운전 3)
- 지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운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벤처기업 자금 지원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기술평가 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벤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규모 : 30억원(금리 3%)
- 지원금액 : 업체당 3억원 이내(시설 2, 운전 1)
- 스타벤처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한해 업체당 5억원 이내(시설 3, 운전 2)
- 지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방법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성, 수익성, 시장성, 사업타당성에 대한 평가보증을 통해 진흥원에서 추천

운전자금 지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함으로써 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

- 지원규모 : 7,804억원(금리 : 3% 이차보전)
- 지원금액 : 일반업체 3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른 차등 추천), 우대업체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거치 약정 상환
- 운영방법 :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접수 → 진흥원 융자 추천 결정



3. 조세감면

조세감면	79
------------	----



3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

● 조세 감면

-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법인세/소득세 : 5년 100%, 2년 50% 취득세 : 면제 재산세 : 7년 50%, 3년 30%

–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 5년 면제

- 제조업(1천만 달러 이상), 유통, 물류업(5백만 달러 이상)

– 법인세/소득세 : 3년 100%, 2년 50% 취득세 : 면제 재산세 : 10년 100%, 5년 50%

경제자유구역

● 조세 감면

- 입주자격 : 국내기업/외국인 지분 10% 이상

– 법인세 · 소득세 : 3년간 100%, 2년간 50%

– 취득세 : 면제

– 재산세 : 10년간 100% 5년간 50%

– 관세 등 : 자본재 5년간 면제

– 임대료 : 부지가액 1%

국내기업

● 조세 감면

- 수도권 이전기업

– 법인세 : 7년간 100%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 면제

– 재산세 : 5년간 100%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 50%(조례25%)

– 재산세 : 5년간 100% 면제



4. 기술 지원분야

4-1	강소기업육성 기술지원단 운영	83
4-2	기술지원사업	84
4-3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85
4-4	산업기술 활성화 지원.....	87
4-5	ISO인증획득 지원사업	88
4-6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89
4-7	기술이전 · 사업화 지원사업	90
4-8	2016 포항시 인증획득 지원사업	91
4-9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92
4-10	'경북SW융합클러스터'글로벌級 R&D 기술개발사업	93
4-11	'경북SW융합클러스터'스타級 벤처 기업육성 생태계 조성	94
4-12	2016년 SW품질강화사업	95
4-13	강소기업육성 지원	97
4-14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98
4-15	경북생태산업단지(EIP)구축사업	100
4-16	나노융합 기술사업화 지원	101
4-17	중소기업청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102



4-1 기업애로지원단 운영

- ★ 지역기업의 기술고충사항 해소, 혁신idea기술 발굴 및 R&D지원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도모

기술지원단 개요

- 지원단 구성 : 47명(리더 1, 단원 46)
 - 포스코기술연구원, 포스텍, RIST, R&D기관 연구원 및 교수
 - 철강대학원, 엔지니어링대학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포항금속소재진흥원
- 운영방법 : 지원단 인력pool 구성 - 분야별 기술 지원
- 지원내용
 - 기술자문 및 컨설팅 : 현장 고충기술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지적재산권(특허), 기술이전 관련 컨설팅
 - 연구개발 : 혁신idea기술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 R&D비용 지원 : 포스코 민관공동투자개발사업 연계 · 지원(개발비의 75%, 최대 10억원)
- 관련기관 : 포스텍, R&D기관 5개소(RIST, POMIA,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 신청시 기술지원단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술 고충사항 해결

4-2 기술 지원사업

지원분야

- 신상품 제작비 지원, 산업기술자문 전산해석,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 등

지원 절차

- 사업공고 → 지원분야별 신청접수 → 지원기업 선정 → 사업수행 및 결과측정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신상품 제작	시제품 제작 관련 기술 지원 및 경비 지원
산업기술자문	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전문가 지원
전산해석지원	각종 전산해석 S/W의 활용을 통한 기술지원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장비 활용 시험분석	장비 활용 시험분석 및 컨설팅
특허출원 지원	특허출원비용 지원
신기술 및 산업동향 지원	기술 자료, 산업동향 자료 및 표준규격자료 제공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pomia.or.kr) 참여마당 - 교육훈련 신청란을 통해 신청
 - 지원분야별 신청서식 작성 후 우편 및 방문접수(Tel 279-9412)

4-3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 연구소가 보유한 연구역량과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외부기관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방사광 기반 기술과 분석기법의 산업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

지원하는 분석기법과 기술

방사광 융합분석	X-선 영상	수십 나노미터 해상도의 3차원 X-선 투과 영상
	연 X-선 분광 분석	자성재료 및 OLED 등의 유기배향 박막 분석
	전자 분광 화학 분석	무기재료 화학 분석
	적외선 분광법	디스플레이 재료, 에너지 재료, 고분자 재료, 생체 시료, 철강 재료 표면 분석
	소각 X-선 산란	디스플레이 재료, 에너지 재료, 고분자 재료, 생체 시료, 철강 재료 표면 구조 분석
	경 X-선 흡수 분광 분석	에너지, 환경소재의 화학적 및 기하학적 구조 비파괴 분석
	나노/마이크로 머시닝	초미세 부품 및 정밀 금형 제작
	백색광 토포그래피	반도체 기판 등 대면적 웨이퍼 결함의 비파괴 분석
중소기업 설비지원	X-선 회절	무기재료 구조 분석
	화학세척	진공부품의 정밀화학 세정 및 표면처리
	용접	진공용 알루미늄 합금제, 스테인레스 스틸 및 각 종 재료와 정밀 부품의 용접
	이종접합	이종금속 접합, 세라믹-스테인레스 스틸, 특수 금속합금 접합, 열세정
	3D측정	대형 구조물 정밀 측정, 전자석, 언듈레이터 구조물 측정
	자기장측정	직류/교류를 사용하는 가속기 및 산업용 전자석의 설계, 제작 및 자장 측정
	대출력전원	대출력, 고전압, 펄스 발생기를 통한 수질 및 대기오염정화, 표면처리, 살균처리, 재질개선, 핵융합 플라즈마 발생 등
	진공분석	진공용기 가스분석 및 진공기밀 시험
	구조해석	구조물의 정/동적 하중에 대한 구조해석
	진동측정	구조물의 진동측정 및 분석, 진동특성 파악, 진동모드 분석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운영

- 제품 및 기술의 공동개발 :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연구 역량과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기술개발의 R&D를 지원
- 제품의 성능 분석 : 연 400여건의 논문 실적으로 인정받는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우수한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을 분석하고 평가

- 포항가속기연구소가 보유한 기술 이전 : 한국을 대표하는 거대과학시설인 포항가속기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이전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비즈니스의 성공을 지원

중소기업지원 (방사광융합분석 수수료 지원)

- 대상서비스 : 방사광융합분석 수수료 (중소기업 설비지원은 해당되지 않음)
- 대상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분석료 감면 : 분석료의 50% 내지 70%를 경감
- 분석료 경감의 경우, 의뢰기관은 분석결과와 사용에 관한 소정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연구소와 공유

연구소 보유 기간기술 현황

- 포항방사광가속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거대과학 연구시설로 범국가적 공동연구시설인 방사광가속기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포항가속기연구소는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음
- 국내 최고의 초고진공 관련 기술
 - 10⁻¹¹ ~ 10⁻¹² torr 의 초고진공 설비 구축/운영/유지보수 기술 보유
- 초고진공 챔버 및 관련 시설의 화학세척 기술 보유
 - 초고진공 챔버 및 관련 시설의 화학세척 기술 보유
 - 연구소 자체 첨단 화학세척 facility 보유 및 운영
- 초고진공 설비 진공 용접 기술
 - 초고진공 설비 및 챔버의 진공 용접 기술 보유
- 금속 이종 접합 관련
 - 이종 금속간 밀폐 및 밀봉, 진공을 위한 접합/차폐 기술 보유
- 대면적 3차원 측정 기술 및 정밀 측량 기술 보유
 - 정밀 기계 부품 및 장비의 형상 측정을 위한 3차원 측정 기술 보유
 - 대면적 부품 및 장비 형상 측정용 고정밀 3차원 측정 시스템 운영
 - 비접촉 3차원 측정 및 정밀 측량용 관련 장비 보유
- 자기장 측정 관련 기술
 - 고정밀/고강도 자기장 측정 기술 보유
 - 자기장 측정 전용 facility 보유 및 운영
- 국내 최고의 대출력 관련 기술
 - 고출력 전원 공급 장치 제어 및 관련 기술 보유
- 정밀 기계 부품 및 설비 등의 구조해석 기술 보유
- 정밀 기계 부품 및 설비의 진동측정 기술 보유

4-4 산업기술 활성화 지원

활성화 지원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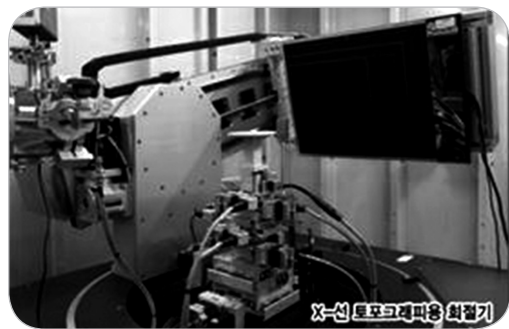
- 융복합분석분야 : 산업기술적용에 특화된 방사광 실험 및 분석 지원
- 산업기술지원분야 : 기계 및 광학장치 특성 분석, 초고진공용 화학세척 지원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과제수행계획수립(전문가 집단) → 방사광 빔라인 실험 → 데이터 해석(전문가 집단)
→ 결과 통보(방사광기여도 등 feedback, 산업현장 방문)

지원내용

- 전기전자소자 비파괴 X-ray 이미징
- 산업소재 미세 성분 분광학적 탐색
- 유기 디스플레이 소자 및 소재 구조 분석
- 첨단 화학세정 설비 활용 및 기술지원
- 이종금속 정밀용접기술 산업체 지원
- 초정밀 기계/의료/광학부품 제작 지원



신청방법

- 포항가속기연구소 산업기술융합센터 홈페이지(<http://industry.pal.postech.ac.kr>) 기술지원 상담 및 신청 게시판 활용 → 방사광분석/화학세척 등 용도에 맞는 신청서류 작성 → 이메일 송부(itccpal@postech.ac.kr)



4-5 ISO인증획득 지원사업

ISO인증 획득 지원사업

● 사업목적

- ISO인증획득을 통한 지역제품의 판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지원분야 : 3개분야(ISO9001/ISO14001/HACCP)
- 지원규모 : ISO인증 1개 업체당 200만원 내외, HACCP인증 1개 업체당 500만원 내외 지원
- 지원시기 : 인증획득 완료 후
- 지원절차 : 신청 ⇨ 지원업체 선정 ⇨ 지도 및 심사 ⇨ 인증획득 ⇨ 인증비용 지원

⇨ 인증서 전달식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 포항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면허소지자)
- 공고일 현재 인증획득 관련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수출 및 수입 대체 효과가 큰 유망기업
- 고부가 가치 창출 가능업체로 대내 · 외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
- 신기술 획득업체 및 신상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

● 우대지원업체

- 우수중소기업체 (훈 · 포장, 중소기업대상 등 수상업체)
- 여성 및 장애인 경영인이 운영하는 업체
- ※ 해당부분의 내용이 확인가능 한 서류 제출시 인정

● 지원제외대상

-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 지원업체 모집 공고 전 컨설팅사와 계약되어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인 업체
- 경북도, 중기청 등 타 지원기관 및 단체와 계약체결 후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인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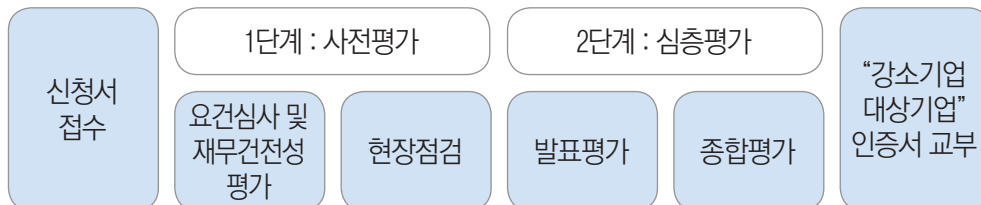
4-6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매년 15개사 내외 선정
- 지원금액 : 과제유형 및 지원분야, 연차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
- 유망강소기업 선정 :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대표 강소기업으로 육성
- 맞춤형 기업지원 : 기업건강진단으로 맞춤형 포트폴리오 도출하여 기술개발, 마케팅, 경영 및 품질혁신,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기업당 3,000천원 내외)
- 연계지원 : 유관기관 기업지원사업 연계 및 중앙정부 R&D 기획 지원
- PM 운영 : PM 매칭을 통해 기업밀착지원

신청방법

- 지원분야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내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포항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창업한지 3년 이상의 2015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00억원 미만인 법인 중소기업
- 선정절차



- 접수 및 문의처
 - 세부사항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pohangtp.org>) 공지사항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련내용 참조
 - 문 의 처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제1벤처동 102호
(재)포항테크노파크 강소기업육성기획팀 이승우(Tel 054-223-2298)

4-7 기술이전 · 사업화 지원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거래 업체
- 기술이전 활성화 유도 및 기술이전 받은 기업들이 제품사업화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양방향 지원체계 구축 → 기술이전 및 사업화기반 강화
- 우수기술의 마케팅 지원, 조기상용화 유도 및 수요기업의 신사업 발굴지원

지원절차

-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문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기관 제출
- 신청서류 제출((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 지원 범위	비고
기술 상용화	- 초기 제품 검 · 인증비용 - 시제품 제작비용 - 기술상용화를 위한 시장조사비용 - 상품로고 및 디자인 설계비용	
기술 마케팅	- 국내 · 외 전시 · 상담회 부스임차비용 - 국외 전시 · 상담회 참가비용 (*통 · 번역비, 국외 항공료, 국외 숙박료 포함)	
컨설팅	- 애로기술, 종합진단(trouble shooting), 신규아이템 발굴, 법률 · 회계 등 컨설팅비용	

신청방법

-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업공고문 참조

4-8 2016 포항시 인증획득 지원사업

사업목적

- 관내 중소기업의 선진 품질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인증획득을 통해 기업의 내부 역량 강화 및 대외 신뢰도 향상

사업내용

- 관내 ISO9001 및 ISO14001 인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인증획득비용 지급

추진전략 및 일정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16. 4월중) → 사업 선정평가 진행 (5월중)
→ 선정결과(5월중) → 지원금 지원(11월중)
- 추진전략 : 인증을 통해 업체 역량발전이 가능한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발굴 및 인증획득 비용 지원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ISO9001	기업당 최대 3,000천원 / 5개사
ISO14001	기업당 최대 3,000천원 / 5개사

신청방법

- 2016년 4월 중 공고예정(TP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접수 불가)
- (재)포항테크노파크 기업지원실 지역산업육성팀 이동혁(Tel 054-223-2125)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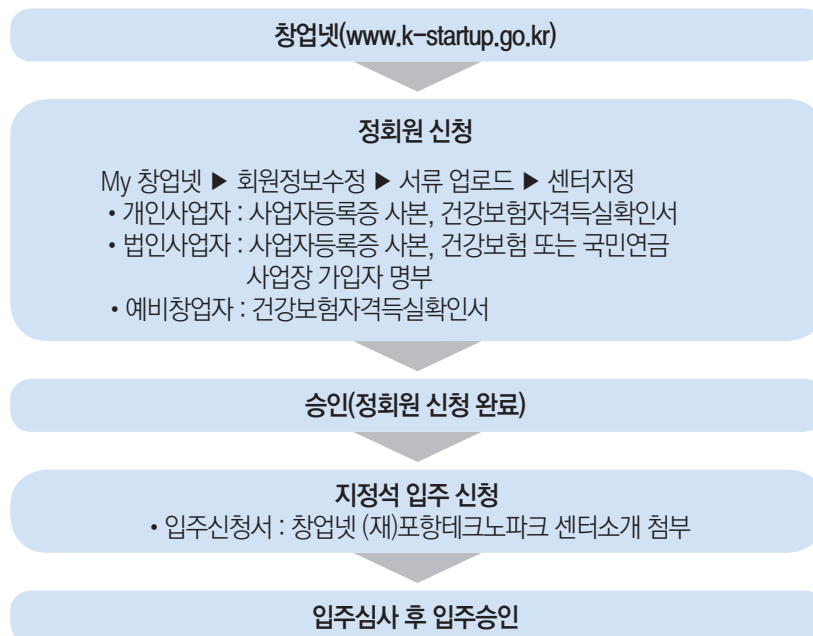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지원내용

- 비즈니스 공간(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및 1인 창업공간 지원(사무집기 제공)
- 경영지원 :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정보제공 등
- 사업화지원 : 1인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정부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연계

입주방법

- 모집대상 : 1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
- 대상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등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창업넷 확인 가능 www.k-startup.go.kr)
- 모집기간 : 상시모집
- 입주기간 : 1년(기간종료 후 심사를 통해 6개월 연장 가능)
- 입주절차



- 문의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207호
(재)포항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팀(Tel 054-223-2245, 2124)

4-10 '경북SW융합클러스터' 글로벌級 R&D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 ICBM 연구분과에서 기획 및 도출된 ICBM핵심기반 기술과제
(지정공모형 R&D)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역 內 특화산업과 SW융합이 가능한 ICBM기반의 기술개발과제
(자유공모형 R&D)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16. 3~4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포항TP/GERI
사전검토	'16. 4	사업내용, 지원자격 등 적합성 검토 참여제한 여부 확인	포항TP/GERI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16. 5	ICBM기술의 적합성 및 기술의 창의성 등 기업의 재무건정성, 추진조직 역량 평가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사업자 확정 · 통보	'16. 5	사업자 통보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승인 · 협약	포항TP/GERI → 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16. 6	출연금 지급(평가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	포항TP/GERI → 주관기관
현장방문	'16. 8~9	현장방문을 통한 과제수행 진도점검	포항TP/GERI → 주관기관
1차년평가	'16. 11	1차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평가 과제추진실적 및 수행결과 보고 /개발완성도 점검 (2차년 계속지원 여부 결정)	포항TP/GERI → 주관기관

지원내용

구분	지정공모			자유공모
	Cloud	Bigdata	Mobile	
1차년도 예산	최대 1.5억원			최대 1억원
2차년도 예산	최대 1.5억원			최대 1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총 2차년도, 16개월 이내)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이메일접수 불가)

4-11 '경북SW융합클러스터' 스타級 벤처 기업육성 생태계 조성

지원분야

- 경북유망기술 고급화 지원사업 : 경북지역 SW융합산업과 관련하여 SW기술을 보유중이거나 개발 중인 SW기술, 제품의 고급화 및 사업화 과제
- 마케팅 닥터 지원사업 : 사업화 마케팅 강화를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경북기술이전 지원사업 : 기술이전 인프라 구축 및 사업화를 위한 제반 비용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16. 3~4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포항TP/GERI
▼			
사전검토	'16. 4	사업내용, 참여제한 여부 확인	포항TP/GERI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16. 5	ICBM기술의 적합성 및 기술의 창의성 등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			
사업자 확정 · 통보	'16. 5	사업자 통보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승인 · 협약	포항TP/GERI → 주관기관
▼			
사업비 지급	'16. 6	출연금 지급(평가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	포항TP/GERI → 주관기관
▼			
현장방문	'16. 8~9	현장방문을 통한 과제수행 진도점검	포항TP/GERI → 주관기관
▼			
1차년평가	'16. 11	1차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평가 과제추진실적 및 수행결과 보고 / 개발완성도 점검	포항TP/GERI → 주관기관

구분	지원내용
경북유망기술 고급화 지원사업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경북기술이전지원사업	기업당 최대 5,000천원
마케팅 닥터 지원사업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이메일접수 불가)

4-12 2016년 SW품질강화사업

사업목적

- 지역 내 IT/SW기업의 특허, 인증 지원을 통한 기술·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 및 신뢰도 제고
- 인증 및 특허획득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쟁력 제고

사업분야[기술지원]

- 국내외 인증획득, 국내외 특허출원 비용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 2016년 인증 건에 한하여 소급적용 가능

지원절차

- 사업공고(상시) → 서류심사 → 결과통보

지원내용

- IT/SW관련 서비스 인증 등에 대한 인증·심사·시험 및 컨설팅 비용 등
- ※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지원
- 지원가능 분야

분류	인증명	활용국가	인증내용	지원항목	지원금
SW관련 인증	GS	국내	SW제품에 대한 인증	인증수수료, 심사비, 시험료, 컨설팅비용 등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건당 500만원 이내)
	ISO9001	국제	품질경영시스템(프로세스)에 대한 인증		
	TMMi	국제	SW테스트 프로세스 인증		
	SP	국내	SW프로세스 인증		
	CMMi	국제	SW프로세스 인증		
	SPICE	국제	SW프로세스 인증		
	CC	국내	보안적합성 인증		
	웹 접근성 품질마크	국내	웹 사이트 접근성 인증		
IT관련 서비스 인증	InnoBiz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인증수수료, 심사비, 시험료, 컨설팅비용 등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건당 500만원 이내)
	MainBiz	국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ISO/IEC 27001	국제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NET	국내	신기술 인증		

분류	인증명	활용국가	인증내용	지원항목	지원금
IT관련 서비스 인증	PMS	국내	기업 경영시스템 역량수준에 관한 인증	인증수수료, 심사비, 시험료, 컨설팅비용 등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건당 500만원 이내)
	TL9000	국제	정보통신품질경영		
	NEP	국내	신제품 인증		
	PISMS	국내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		
	PIPL	국내	개인정보보호 인증		
	PIA	국내	개인정보영향 평가		
	ISO/IEC 20000	국제	IT 서비스 관리 체계		

신청방법

- 사업확인 :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 사업기한 : 사업기간 내 상시 접수(~ 2016년 11월)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요약서(소정양식), 결과활용계획
 - 201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13 강소기업육성 지원

사업개요

-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

기술지원 사업

사업명	내용
강소기업육성 기술지원단 운영	● 구성 : 47명 · 포스코기술연구원, 포스텍, RIST, R&D기관 연구원 및 교수 ● 지원내용 · 기술자문 : 현장 고충기술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연구개발 : 혁신idea기술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 시험분석 지원
클린포항 전문기술 지원단 운영	● 구성 : 28명 · 포스코, RIST, 포스코ICT 관계부서 전문가 ● 지원내용 · 스마트 에너지 : 기업의 에너지 진단 및 공정효율 향상 · ECO 산단 : 기업의 환경개선 및 부산물 재활용망 구축 · 스마트 팩토리 : 고품질 자동화 생산체계 구축
기술사업화 장터 구축	● 지원내용 · 포스텍, RIST, R&D기관의 특허기술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이전 · 신기술 개발 지원 및 기술이전 거래 지원 · 사업화 및 전문가 컨설팅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총개발비의 75%이내 최대 10억원까지

기술지원 사업

- 포스코 사용 재료 개선 R&D 지원 및 일정기간 구매 보장

컨설팅 지원

- 기업의 취약부분인 법률, 마케팅, 파이낸싱 분야 자문 지원

강소기업육성펀드

- 강소기업 육성 펀드 조성 ·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4-14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사업개요

- 목적 :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를 “지식과 정보교류,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창조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지원절차

〈산단R&BD역량강화사업 추진절차〉

프로세스	세부내용
지원과제 도출 (아이디어 등록)	● 지역거점기관(산단공 지역사무소) • 미니클러스터 활동으로 과제 발굴 • 아이디어 카드 등록(모바일, 웹)
신청서 제출 · 접수	● 주관기관(사업참여기업) ⇨ 지역거점기관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관리기관(지역거점기관 수행가능) •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 참여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 지역평가위원회 • 과제의 채택 및 우선순위 등 결정
협약체결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3자 협약
중간점검(필요 시) 및 사업수행관리 (변경 등)	● 관리기관 • 필요시 또는 6개월 초과 과제에 한하여 실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사용 실적보고서 제출	● 주관기관 ⇨ 관리기관
사업비정산 및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 관리기관 ● 최종평가 : 지역평가위원회
최종결과 통보	● 관리기관 ⇨ 주관기관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 관리기관 ⇨ 지역거점기관 ⇨ 주관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결과보고 등

지원내용

◎ 주요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미니클러스터 운영사업	산학연협의체간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운영지원과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R&BD관련 전후방 연계지원하는 R&BD 촉진과제를 수행
산단R&BD 역량강화사업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발굴된 기업 애로과제를 평가·선정하여 지원

◎ 중소기업 현장애로 과제 발굴 및 지원(2015년 예시)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조건
미니 클러스터 운영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 월례포럼, 과제발굴, 기술세미나 등 전문화된 네트워크 활동	- MC회원(기업, 지원기관)
	R&BD 촉진 과제	산업재산권 출원	- 건당 2백만원 이내(소요비용의 70%이내) - 건당 3백만원 이내(소요비용의 70%이내)
		- 해외특허 및 PCT 출원	- 건당 7백만원 이내(소요비용의 70%이내)
		토탈마케팅	- 공동광고 및 홍보 - 업체당 10백만원 이내(소요비용의 70%이내)
		- 국내전시회 참가 - 해외전시회 참가 - 해외시장개척 활동	- 업체당 3백만원 이내(소요비용의 70%이내) - 업체당 8백만원 이내(소요비용의 70%이내) - 업체당 5백만원 이내(소요비용의 70%이내)
		현장맞춤 교육훈련	- 임직원 업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 건당 50백만원 이내(소요비용의 70%이내)
		(신설) 이전기술활성화	- 기술맞보기(한시적 기술실시권 제공) - 기술료유예(매출시점까지 기술료 지불) - 건당 5백만원 이내(소요비용의 70%이내) - 건당 5백만원 이내(소요비용의 70%이내)
		(신설) R&BD 기획컨설팅	- R&BD 관련 전문가(기관) 활용컨설팅 - 업체당 2백만원 이내(소요비용의 70%이내)
		신설 MC창의혁신 IDEA지원	- R&BD촉진과제로 지원할 수 없는 창의혁신 아이디어 발굴 지원 - 업체당 3백만원 이내(소요비용의 70%이내)
산단 R&BD 역량 강화	R&BD 과제	생산기술사업화지원	- 현장맞춤 기술개발 부문 - 이전기술사업화 부문 - 기업공동참여 필수(2개기업 + 산 or 학 or 연) - 1년이내, 최대 2억원(국비75%)
		(신설) 매버릭형 기업육성 R&BD 지원사업	- 자체 기술우의 및 자체브랜드(기술)로 틈새시장 개척 지원 - 기업 공동참여는 선택(산학연 컨소시엄 필수) - 2년이내, 연간 최대 3억원(국비75%)

* 2016년 지원내용은 추후확정 예정으로 상기내용과 다를수 있음

신청방법

◎ 업종별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 회원가입후 기업 현장애로 발굴 및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항사무소(Tel 070-8895-7757~8)

4-15 경북생태산업단지(EIP)구축사업

경북 생태산업단지(EIP) 구축사업

- EIP(Eco-Industrial Park) : 경북지역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폐기물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
- ※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 :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자원,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하여 오염물 무배출을 지향하는 산업단지 조성
- ※ 사업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업 내용

1	에너지 · 자원순환 기술개발 보급사업	2	성과확산 · 보급사업
● 에너지순환 네트워크 과제발굴 ● 과제 정산/관리/기술료 징수 ● 과제 선정율 제고		● 완료과제의 사업화 촉진 지원/관리 ● 산업단지공단 직접투자 사업 발굴/추진 ● 산업공생 최적 모델 발굴, 우수사례 홍보	
3	산업공생 네트워크 구축사업	4	국내 · 외 교류협력사업
● 지역별 특화 산업공생맵 수립 ● 사전타당성 조사 등 기획사업 추진 ● 포럼/코디네이터 구성 및 운영		● 사업설명회/교육/세미나 등 개최 ● 국내 · 외 학회 성과발표 ● 국제산업생태학회(ISIE) 컨퍼런스 지원	

지원 내용

구분	일반과제	지역친화형	보급형
지원내용	산업단지 중심 자원순환 네트워크	지역친화형 자원순환 네트워크	범용기술 확산 사업
과제비	120백만원/년 이내	200백만원/년 이내	50백만원/년 이내
지원 기간	1년	2년 (연차평가)	1년 미만
추진 체계	1개의 프로젝트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2~3개의 sub project 통합 추진	기술패키지를 구축, 기술 확산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발굴 방식	지역사업단 발굴 (Bottom-up, 수시발굴)	자유공모(사무국) (Top-down)	자원절약 전문기업이 사업단과 협의하여 발굴
평가위원회	3, 4, 5, 7, 9월	6월	8, 10월

지원 방법

- 지역사업단(대구/경북EIP 경북사업단) 문의(Tel 070-8895-7771~3)

4-16 나노융합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목적

- 국가 나노인프라의 설립목적인 지역 나노융합 산업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를 추진함

지원내용

-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NINT에 구축된 특화분야 [첨단 나노융합소재/부품(반도체/디스플레이/에너지 등)] 첨단장비 및 산업화지원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 R&D(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종합 지원

지원분야

- 국가 및 지역의 신성장동력원으로써 새로운 먹거리 창출, 매출 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
-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력반도체(MOSFET) 산업화분야 첨단나노소재를 활용한 선도적 기술수준의 차세대 반도체(SiC, GaN 등) 및 센서 산업화분야

지원규모

- 첨단 나노인프라 제반시설(산업화지원 전용장비 31종 및 클린룸 등)

지원기간

- 계약 체결시부터 6년간(기술사업화 계약은 6년간 유효하며 나노인프라 사용료는 2년마다 상호협의 후 변경 가능)

신청방법

- 기술사업화 시설 및 장비 목록을 열람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자격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개최)에 의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인 기업, 공동협력기관, 산·학·연 컨소시엄, 연구기관 및 지역특화센터 등

문의처

- 기술사업화 문의: 기획실(Tel 054-279-0218), E-mail: feiyou@pastech.ac.kr

4-15 중소기업청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보유한 연구장비의 이용료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 산·학·연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장비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지원내용

-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중소기업당 정부지원금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장비 이용료 60~70% 지원

구분	바우처 총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100%	70% 이내 (최대 3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100%	60% 이내 (최대 3천만원)	40% 이상 (현금)

- ※ 시작품 제작을 위한 바우처 구매는 연구개발 결과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 가능
(생산용 및 영업용도 활용 불가)

참여기업

- 대학·연구기관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 가능한 도입금액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한 대학·연구기관(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 ※ NINT 홈페이지 장비예약시스템 연계(SMTECH 예약번호 입력)

문의처

- 포항나노융합기술원(www.nano.or.kr) 홈페이지 참조
- 바우처 문의: 사업지원팀(Tel 054-279-0203), E-mail: lily223@postech.ac.kr

5. 판로 지원분야

5-1	포항시 수출 지원센터 운영	105
5-2	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106
5-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107
5-4	대구기업명품관 운영	108
5-5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지원	110
5-6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111
5-7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112
5-8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사업.....	113
5-9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114
5-10	FTA/수출컨설팅	115
5-11	국내 판로 지원	117
5-12	해외 판로 지원	119



5-1 포항시 수출지원센터 운영

사업명	지원내용
해외 유망전시회 (박람회)참가 지원	● 지원규모 : 지역 4개 업체 ● 지원분야 : 유망국제전시회 참가를 통해 지역 기업 제품과 선진제품과의 품질경쟁력을 비교해 발전방향 모색 ● 지원내용 : 편도항공료, 전시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물품운송료, 통역 제공, 신흥개도국
외교관 초청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 지원규모 : 포항 지역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신흥개도국 시장으로의 판로개척, 기존 진출기업의 현지 경영애로 해소 ● 지원내용 : 주한외교관과 개별 수출 상담 및 인적교류 지원
지역기업 수출판로 개척 및 시장개척단 파견지원	● 지원규모 : 지역 수출업체 및 시장개척단 및 유관기관 ● 지원분야 : 포항지역 수출품 홍보 및 수출판로 개척, 글로벌 경영마인드 제고 ● 지원내용 : 편도항공료(이코노믹 기준), 현지차량, 통역
지역기업 해외진출 모색 및 해외현지법인 지원	● 지원규모 : 지역 기업 중 해외 진출업체 및 향후 진출희망기업 ● 지원분야 : 해외 투자 지역기업의 정착 판로개척 지원, 해외시장 진출 · 개척에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해외현지법인 현황조사, 해외시장개척 성공전략 세미나, 해외현지법인 벤치마킹, 현지법인 관계자와 간담회
신규해외 바이어 발굴 및 신용조사 지원	● 지원규모 : 지역 수출업체 15개사 ● 지원분야 : 관내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및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절감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 지원 ● 지원내용 : 신규 해외바이어 100개사 알선 서비스
수출지원 FTA컨설팅 & 센터운영 지원	● 지원규모 : 관내 수출입관련 업체 ● 지원분야 : 지역 중소기업 발굴 및 집중지원, 수출기업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발굴 ● 지원내용 : FTA 활용 관련 상담 및 방문 컨설팅, 제도개선사항 건의, FTA 활용 교육 등
외국어 통역, 번역 지원	● 지원규모 : 지역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통번역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해외통상 활동을 위한 통 · 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바이어 및 해외경제 사절단 초청교류 지원	● 지원규모 : 해외바이어, 외국경제사절단, 산업시찰단 등 각국 방문단 대표 지원 ● 지원분야 : 외국 경제사절단 초청 교류사업, 해외자매우호도시 경제협력을 위한 교류사업 등 ● 지원내용 : 외국바이어 초청 간담회 및 개별 무역상담 지원

5-2 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추진개요

- 지역수출기업들의 각종 FTA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FTA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기업들의 FTA 활용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 FTA 상담 전문 관세사 컨설팅 지원
 - 상담자 : FTA 전문상담원(관세사)
 - 상담내용 : 품목별 관세율 확인 및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입기업
- FTA 전문가 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FTA 협정관세율 확인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분석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안내
 - 원산지증명서 신청 · 발급 지도
 - 원산지 사후 검증 요령 안내 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입기업
- FTA 활용방안 설명회 : 미국과 유럽, 아세안, 인도 등 FTA 체결국들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통관절차와 환급실무 및 외환관리법 등 각 협정별 활용방안 제고를 위한 설명회
 - 사업기간 : 연중 수시
 - 교육대상 : 수출입기업 실무담당자, 관세사무소 실무자 등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 : FTA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요령, 작성방법 등 지역 수출기업 담당자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 사업기간 : 연중 수시
 - 교육대상 : 수출입기업 실무담당자, 관세사무소 실무자 등
- 찾아가는 FTA 활용교육 : 지역 수출기업을 방문하여 소수 · 정예로 기업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
 - 사업기간 : 연중 수시
 - 교육대상 : 수출입기업 실무담당자
- FTA 활용전문가 양성교육 : 지역수출기업 담당자 및 대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 FTA 전문가 양성을 위한 종합교육
 - 사업기간 : 연 2회
 - 교육대상 : 수출입기업 담당자, 대학생, 일반시민 등
- 원산지관리사 양성 및 자격취득 지원교육 : 지역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공인자격인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지원
 - 사업기간 : 연 2회
 - 교육대상 : 수출입기업 담당자, 대학생, 일반시민 등

5-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사업목적

-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운영

지원내용

목 적	제도의 종류
중소기업 수주 확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중소기업자간 규모별 경쟁제도 -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보험 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운영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지정 지원(추천)
 - '15년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207개, 직접구매대상제품 123개 지정
-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국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유효기간 : 2년
 -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1년 → 2년으로 연장('11)
-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 추천제도 운영
 - 5천만원 이하 中소간경쟁제품 계약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수의계약
-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조사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위반신고센터 운영

5-4 대구기업명품관 운영

판매장 개요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 규모 : 대지면적 4,973㎡, 건축면적 : 4,649㎡
- 영업시간 : 오전10시 ~ 오후8시30분 (정기휴무 : 매월 2,4째 화요일)
- 입점현황

구분	구 성	판 매 품 목
1층	쉬메릭전문관(16개), 패션잡화.의류(21)	• 쉬메릭제품, 의류, 전통한복, 등산용품, 귀금속, 건강용품
2층	커피숍, 골프웨어, 목공예, 도자기 등 14개 업체	• 골프웨어, 커피숍, 목공예, 대구우수기업관, 도자기 외
3층	사무실, 증권사, 회의실	• 사무실, 협동조합, 식당

● 입점업체

NO	업체명	품목(브랜드)	전화번호
1	(주)한성에프엔씨	와이셔츠(쉬메릭)	053)568-1019
2	비비제화	구두	053)525-0944
3	(주)에이디씨	스포츠웨어	053)568-6800
4	이진옥천연염색	천연염색의류	053)566-0838
5	무지개	침구	070-4353-0918
6	아이베딩	침구	053)561-0804
7	금비보석	귀금속	053)522-1301
8	진영사	귀금속	053)568-1321
9	정인주얼리	귀금속	053)568-1303
10	원화주얼리	귀금속	053)584-4344
11	세느	여성복	053)527-5552
12	오렌지	여성복	053)522-4214
13	래미안	여성복	053)523-1230
14	매니아	남성정장	053)558-3366

NO	업체명	품목(브랜드)	전화번호
15	레쓰마운틴	아웃도어	053)522-9382
16	자연과사람	생활용품	010-4505-7569
17	홍삼월드	홍삼	053)568-1210
18	드림플라워	꽃집	053)521-0560
19	트리샤	네일	053)565-8245
20	아레나스포츠	수영복	053)552-2054
21	레노마	수영복	053)524-2820
22	아드리제	여성화	010-3116-6292
23	엘르토탈	속옷	053)568-1315
24	신사공예	가구공예	053)568-1336
25	다인공방	도자기	053)568-0201
26	대림목공예	목공예(쉬메릭)	053)523-3455
27	텍스텍	풍기인건	010-2809-8531
28	예그리나	화장품	053)563-3636
29	디즈니골프	골프웨어	053)525-2161
30	플레이보이골프	골프웨어	053)522-3318
31	아놀드파마	골프웨어	053)556-7004
32	마코	골프웨어	053)522-3310
33	그린조이	골프웨어	053)523-0770
34	올포유	골프웨어	053)523-0770
35	대구우수기업관	생활용품	053)568-1203
36	쉬메릭	생활용품	053)568-1203
37	제일사	상품권	053)568-3333
38	팜파스	여행사	053)567-8888
39	바리스타b	커피숍	053)555-5500

5-5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지원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해외 단체전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등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지원

지원규모

- 3,400개사 내외 (전체 예산 190억원)

지원대상

- 업종별 중소기업 전문단체 · 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유관기관
- *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전시회는 제외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직접경비의 일부, 홍보부스, 홍보물 제작 등 공동경비 지원(업체당 10백만원 이내)
- 시장개척단 :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 섭외비, 통역 등 공통경비 지원(업체당 10백만원 이내)
- 수출컨소시엄 : 사전시장조사,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금액의 70~100% 지원 (컨소시엄 당 2억원 이내)

신청 · 접수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 → 주관단체 → 참가신청'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참가 및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관련업무 수행실적 설명자료, 전시회 수준 평가자료 등
 - * 참고 및 증빙서류
 - 부스임차료 · 장치비/㎡(전시회 브로슈어 등), 부스임차계약서(사전임차의 경우), 전시물품운송료 단가표 등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전년기준으로 제출

5-6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사업목적

- 온라인 구매오퍼 사후관리 지원
 - 무역전담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고비즈코리아를 통한 구매오퍼 사후관리 및 무역업무 단계별 지원으로 수출계약까지 One-Stop 서비스를 지원
- 다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 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하여 온라인마케팅 활용성이 우수한 다국어 상품페이지를 제작 및 고비즈코리아 등록을 통하여 해외바이어에게 회사소개, 제품정보를 노출시켜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Google, Yahoo 등 글로벌포털사이트 검색엔진 상위 노출을 고려한 설계 및 디자인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구축을 지원
- 검색엔진 마케팅 지원
 - 기업의 홈페이지를 Google, Yahoo 등 해외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포털사이트에 일정기간 상위 등록하는 서비스로 키워드 세부분석, 웹사이트 수정 등 검색엔진최적화(SEO)방식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
- 온라인수출관 지원사업
 -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및 제품정보를 현지어 상품페이지로 제작하여 현지 타겟 마케팅을 제공
- 방한바이어 기업현장방문 지원
 - 해외에서 방문하는 바이어와의 상담이 예정된 중소기업이 무역상담지원 및 통역이 필요할 경우 무역전문가가 상담현장을 방문하여 무상으로 지원

5-7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사업개요

-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 지역별, 품목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해외마케팅 사업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

사업소개

구분	사업내용	지원내용
해외전시회	세계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해외전략시장의 한국 단독 전시회 개최하여 수출지원	공통경비(부스임차료, 설치비, 장치비, 편도운송비, 관리비, 홍보관 운영비 등) 일부지원
무역사절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 해외 현지에 파견하여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공통경비(바이어 상담비용, 현지 교통편, 상담장 임차, 통역, 자료제공 등)의 일부 지원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의 수출희망 중소기업에게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수출상담회 참가비용 지원
지역특화 해외마케팅	지역의 산업별 · 업종별 특성에 맞는 토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개별사업 공고문 참조
해외지사화	해외지사 설립을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 지원하는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의 비용 일부 지원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용 일부 지원
해외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맞춤형 시장조사(수요, 경쟁, 가격조사 등), 바이어 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KOTRA 해외시장조사 사업의 비용 일부 지원	KOTRA 해외시장조사사업 참가비용 일부 지원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해외 비즈니스 출장 시 바이어와의 상담 장소 제공, 호텔 예약 등을 지원하는 KOTRA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사업의 비용 일부 지원	KOTRA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사업 참가비용 일부 지원

추진절차

01	사회계획수립	중진공은 지자체, KOTAR등과 지역별, 산업별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02	참가업체 모집/선정	국내업체 평가와 해외시장평가를 고려하여 현지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합니다.
03	수출지원	중진공은 국내활동을, KOTRA/민간네트워크 등 현지기관은 해외활동을 전담하여 지원합니다.
04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에도 참여기업의 수요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합니다.

5-8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모집하여 해외 대형바이어와 연계 및 현지 유통망을 통한 소비자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목적

- FTA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유럽 등의 대형유통망에 B2C 위주의 중소기업 진출 확대
(대형유통망 : COSTCO, Sam's Club, Target, QVC 등 해외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등)
- 브랜드 인지도가 미흡하고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위한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

지원대상

- 해외 대형유통망(마트, 백화점, 온라인, 홈쇼핑 등) 진출이 유망한 국내 생산 중소기업 제품(Made in Korea)

지원내용

- (해외 유통망 상품 소싱시스템 구축) 수출 유망상품 정보 수집 및 DB 구축(연 1만개)→유통망 바이어·벤더의 1차 상품 선택→선정위원회를 통한 지원대상 상품 선정→유통망 진출 지원
- (진출 상품 현지화 지원) 현지제도, 가격, 상품개선, 시험·인증 등 해외유통망 진출시 요구되는 개선사항 등에 대해,
 -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 사전 컨설팅 지원
 -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실행비용 지원
- (시험·인증 획득 지원) 대형유통망 바이어가 제품의 우수성·신뢰성 입증에 위해 요구하는 다양한 시험성적서를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대행하고 소요비용 지원
- (『물류 및 A/S 지원센터』 설치·운영) 해외 중기제품 전용매장 소재지역에 설치하여 창고, 상품공급, 재고관리, 배송, A/S 등 지원
- (『중기제품 전용매장』 설치·운영) 해외 주요지점에 설치, 제품 전시 및 판매를 통해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
 - 입점제품 현지 마케팅 강화, 소비자 니즈 파악 및 제품에 반영, 대형유통매장 바이어 상시 발굴 및 주기적 상담회 개최
- (유통망 형태별 직접 진출) 대형 유통매장 프로모션 프로그램 참여, 온라인쇼핑몰 및 홈쇼핑 진출을 통한 정식입점 추진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5-9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추진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하여 중진공과 글로벌 컨설팅사 및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해외진출 성공률을 제고하는 사업

사업개요

-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전문 컨설팅 회사, 마케팅회사, 무역회사 등을 통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
- 성장성과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진출 지원을 위해 세계 주요국의 민간 글로벌 컨설팅사가 현지 지원창구 역할을 수행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사업에 대해 해외민간네트워크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
 - 업체의 요청에 맞는 최적의 전문 컨설팅회사 연계
 - 수출바이어 발굴, 해외투자 등을 위한 시장조사 및 협력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 기술협력선 발굴,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유통망, 국제조달시장 진출, 전략적 제휴 파트너 발굴 및 기타 해외진출 관련 영역
- 소요 컨설팅 용역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지원비율 : 프로젝트 소요비용의 70~50%
 - 지원금액 한도 : 북미, 유럽, 일본, 싱가포르, 러시아CIS, 대양주,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지역은 최대 2,000만원, 중국, 동서남아, 중남미(기타) 등 경우 1,700만원 이내 동서남아, 중남미(기타) 등 경우 1,700만원 이내

신청·접수

- 신청대상 : 구체적인 해외진출 추진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5-10 FTA/수출컨설팅

사업개요

- 중진공이 보유한 국가, 전문분야, 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표기 등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대상

구분	내용	
지원대상	FTA 컨설팅	FTA 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FTA 대행컨설팅	
	수출 컨설팅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연계(FTA+수출)컨설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내용

구분	내용	
컨설팅 내용	FTA 컨설팅	원산지 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FTA 대행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FTA 판정시스템을 구축하고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FTA 교육 등을 상시적으로 지원하여 FTA 전문인력 채용 효과 구현
	수출 컨설팅	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환위험관리, 무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 발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 등
참여전문가		대기업·금융기관·종합상사·공공기관 근무 경험 등 수출전문가와 관세사 등 FTA 전문가
지원한도 (1차)	FTA 컨설팅	FTA 컨설팅 : 6일 이내
	수출 컨설팅	수출컨설팅 : 3일 이내
	연계컨설팅	FTA 및 수출컨설팅 연계 : 9일 이내

구분	내용	
중복지원 (2~3차)	지원대상	1차 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며,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예 : 신시장진출, 신규상품 수출 등)
	지원 회수	3회까지 [FTA 무역종합지원센터(각 지역센터 포함) 및 관세청 컨설팅을 포함]
	중복지원 한도	2차 : FTA 4일 이내, 수출2일 이내, 연계 6일 이내 3차 : FTA 3일 이내, 수출2일 이내, 연계 5일 이내
업체분담금		소요비용 중 업체분담금은 '14년도 매출액별 차등부과 ('14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3년도 매출액, 매출이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으로 산정) * 매출액 10억 이하 : 무료, 10~50억 이하 : 10%, 50~500억 이하 : 20%, 500억 초과 : 30%

지원방법



5-11 국내 판로 지원

도 우수 제품 브랜드 ‘실라리안’ 운영

★ 경상북도 우수브랜드 “실라리안”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하고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지원대상 : 4개 업종, 19개 업체
- 사업내용
 -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 공중파 방송 홍보, 지하철 홍보, 지역축제 참가 등
 -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On+Off line을 통한 다양한 판촉활동 전개
- 참여방법 : 공고(진흥원) → 접수 → 심사 → 선발 → 사업참여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운영

★ 농산물 시장개방과 대형유통업체 확대 등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의 직거래 활성화 유도

★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

- 사이트명 : 경북 쇼핑몰 사이소(www.cys0.co.kr)
- 지원대상 : 경북 농·특산물 생산자, 실라리안 등 우수업체
- 사업내용
 - 쇼핑몰 입점
 - 농특산물 직거래 마케팅(홍보, 직거래 판매 등)
 - 상품관리, 주문, 배송, 정산지원
 - 대형유통매장 특판 행사 지원
 - 콜센터 운영 등
- 신청방법 : 사이소 입점 신청 → 심사 → 선정 → 참여

경북6차산업『안테나숍』운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북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형유통업체내 『안테나숍』입점 및 운영으로 6차산업 생산 제품의 고객 반응 Test와 매출 향상

- ◎ 지원대상 : 경북6차산업 인증업체 및 예비인증업체 제품
- ◎ 사업기간 : 년중
- ◎ 지원내용 :
 - 『안테나숍』 운영 및 각종 마케팅 활동 등
 - 3개소 - 대백프라자, 이마트 경산점, 이마트 구미점
 - 『안테나숍』 운영 인력 지원, 각종 판촉활동 등
- ◎ 참여방법 : 공고(진흥원) → 접수 → 심사 (품평회) → 선정 → 사업참여

경북6차산업『판매플랫폼』운영

★ 경북6차 산업 인증 제품대상 소비자들에게 우수제품을 알리고 시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역 대형 유통업체내에서 지속적인 행사 추진 및 프로모션활동으로 6차산업 생산 제품의 판로 확대 지원

- ◎ 지원대상 : 경북6차산업 인증 업체 및 예비 인증 업체
- ◎ 사업내용 :
 - 국내 대형유통업체(백화점, 할인점)내 일정 기간 특별 판매전 개최
 - 행사기간 : 7일 ~ 10일간
 - 추진 횟수 : 년 5 ~ 6회 정도
 - 행사장 구성, 프로모션, 판매인력(일부) 지원 등
- ◎ 참여방법 : 공고(진흥원) → 접수 → 심사 (품평회) → 선정 → 사업참여

5-12 해외 판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 유망한 국제전시회 참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과 선진 제품과의 품질경쟁력을 비교하여 제품의 발전 방향 모색
- ★ 신규 시장 및 신규 바이어 발굴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증대 유도

- 사업기간 : 2016년 01월 ~ 12월
- 사업규모 : 21회, 160개 업체 정도
- 지원대상 :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생활품목, IT, 섬유, 농자재 등
- 지원내용 : 전시제품 편도 운송료, 통역비, 부스 임대비, 부스 장치비 등
- 주요내용 : 제품 홍보, 기술동향 파악 및 해외 바이어 발굴

순번	전시회명	지역	시기	업체수	품목	비고
1	중국화동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 상해	3월	5	소비재	
2	하노이엑스포	베트남 하노이	4월	5	종합	
3	태국 춘계 종합박람회	태국 방콕	4월	5	종합	
4	심천 선물용품/가정용품 종합전시회(춘계)	중국 심천	4월	5	선물/소비재	
5	동서부경제무역상담회	중국 시안	5월	10	종합	
6	G-FAIR MUMBAI	인도 뭄바이	5월	7	종합	
7	두바이자동차부품전시회	UAE두바이	6월	4	차부품	
8	쿤밍 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 곤명	6월	5	소비재	
9	국제수송기계전(자동차부품)	한국 일산	6월	5	차부품	
10	미국오하이오 농업전시회(Cultivate'16)	미국 오하이오	7월	10	농자자재	
11	솔트레이크시티기능성의료박람회	솔트레이크 시티	8월	5	의류	
12	이란섬유기계전시회	이란	9월	5	섬유기계	
13	추계파리프리미에르비종	프랑스 파리	9월	5	섬유	
14	중국상하이국제자동차부품박람회	중국 상해	10월	4	차부품	
15	반동 Garment&Textile EXPO	인니 반동	10월	5	섬유기계	
16	상하이인터텍스타일	중국 상해	10월	5	섬유	
17	필리핀우수상품전시상담회(FEEL KOREA 2016)	필리핀 마닐라	11월	25	종합	
18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박람회	미국 라스베가스	11월	5	차부품	
19	코아쇼	한국 일산	11월	25	차부품	
20	ITMA아시아국제섬유기계전	중국 상해	10월	5	섬유기계	
21	터키안탈리아농업전시회(Growtech Eurasia 2016)	터키 안탈리아	12월	10	농업자재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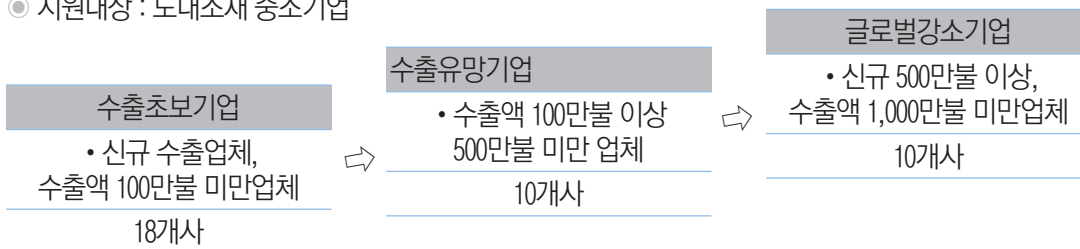
- ★ 기업별 업종에 맞는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을 통해 참가부담금 경감으로 경영안정 도모
- ★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출 전략을 수립하여 집중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자력 수출역량 배양과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

- 사업기간 : 2016년 01월 ~ 12월
- 지원대상 :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20개사 정도
- 지원내용 :
 - 참가업체의 부스비 전액 지원(임차비 50~100%)
 - 업체당 연간 900만원 이내(1회 최대 600만원 한도, 2회 이내)

경북 수출 SMART기업 육성

- ★ 수출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해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은 수출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사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도내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비율
수출초보기업	해외시장조사, 해외지사화, 바이어거래알선, 외국어 카탈로그/동영상 제작, 수출보험료 지원,	5,000천원	소요비용의 50% (자부담 50%)
수출유망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수출컨설팅, 수출계약 바이어 초청 지원, 해외수출상담 출장 지원, 수출용 견본 제작 및 운송비 지원,	8,000천원	
글로벌강소기업	목합상품 미니어치 및 시연품 제작, 수출포장, 인터넷해외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 마케팅 활동	10,000천원	

- 참여방법 : 공고→ 신청접수→심사→ 선정→ 세부사업진행→ 선정기업현장실사→ 지원금 청구→ 서류검토 후 지원금지급→ 정산보고→ 사후관리

통상투자주재관 발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미국, 중국 등 해외사무소 통상투자주재관이 직접 지역전략품목 및 생활소비재, 기계, 가전 등 분야의 현지 검증된 바이어를 발굴하여 도내 기업체와 수출상담회 개최

-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 규모 : 연1회, 초청바이어 30개사 정도
- ◎ 지원대상 :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70개사 정도
- ◎ 참여품목 : 종합품목
- ◎ 지원내용 : 해외 바이어 편도 항공료, 체재비, 상담장 및 차량제공, 통역지원 등
- ◎ 주요내용 : 중국, CIS 등 실크로드지역과 통상주재관이 거주하는 지역의 유력바이어를 초청하여 도 내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수출상담 기회제공

물기업 수출 지원사업

★ 도내 물기업의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등 전략적인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

-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 지원대상 : 도내 소재한 물 사업관련 10개 업체
- ◎ 참여품목 : 멤브레인, 상수, 하수, 폐수관련 등
- ◎ 지원내용
 -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사업
 - 외국어 홍보물제작, 수출용 시제품제작, 수출포장 및 물류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물기업 해외수출 설명회, 바이어 상담 지원

해외사무소 운영

★ 경북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상시지원을 위한 해외 수출마케팅과 해외 투자유치 지원활동 및 국제 교류 · 협력, 도정 홍보활동 등

- ◎ 운영현황 : 총6개소(중국 북경, 상해, 일본 동경 미국 LA, 뉴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 인 력 : 해외통상주재관 각 소마다 1명씩 파견 및 현지인력 운영

● 주요내용

- 주재지역별 핵심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개최
- 도내 전략품목 수출업체 신흥시장 진출 지원
- 해외 관광객 유치, 독도 알리기 등 도정시책 홍보
- 무역사절단,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지원
- 유력투자가 · 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지원
- 해외진출 및 수출기업 희망업체 시장 조사
- 제반 사업 홍보 및 국제협력 관련 각종 정보 수집
- 경북도 해외 타킷 수출품목 및 시장동향 조사

6.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분야

6-1	중소기업 산업디자인개발 지원	125
6-2	포항시 1기업 1핵심기술 정보제공 지원	126
6-3	중소기업 인터넷마케팅 지원	127
6-4	마케팅활성화사업.....	128
6-5	지능형기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지원사업	129
6-6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132
6-7	사업전환지원사업.....	133
6-8	무역조정지원사업.....	135
6-9	M&A 지원사업	137
6-10	진로제시 컨설팅사업	138
6-11	기업회생컨설팅 사업	139
6-12	이업종교류 사업	140
6-13	컨설팅 지원	142
6-14	해외 판로 지원	143
6-15	중소기업기술화 지원사업.....	146
6-16	2016년 해외SW융합시장 현지화 컨설팅 지원사업	147
6-17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사업.....	148
6-18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	149
6-19	지능형기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	150
6-20	창업 지원(창업HUB)	151
6-21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152



6-1 중소기업 산업디자인개발 지원

추진개요

● 목 적

- 지역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이미지 제고로 기업 매출증대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 사업내용 : 기업CI, 제품BI,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 사업비 : 1,215만원(업체당 200만원 한도 내)
- 지원규모 : 6개 업체 정도
- 신청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Tel 275-2967)

6-2 포항시 1기업 1핵심기술 정보제공 지원

추진개요

● 목적

-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획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논문, 특허, 분석보고서 등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4. ~
- 사업내용 : 1기업 1핵심 기술정보조사 등 제공
- 사업비 : 810만원(업체당 100만원 정도)
- 지원규모 : 8개 업체 정도
- 신청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Tel 053-601-5206)

6-3 중소기업 인터넷 마케팅 지원

추진개요

● 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한 홍보효과를 기반으로 국내시장,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4. ~
- 사업내용 : 홈페이지 제작지원 등
- 사업비 : 1,500만원(업체당 300만원 정도)
- 지원규모 : 5개 업체 정도
- 신청처 : 경북동부경영자협회(Tel 278-5143)

6-4 포항시 1기업 1핵심기술 정보제공 지원

지원분야

- 홍보물제작지원, 국내외 인증획득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시장개척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지원분야별 신청접수 → 지원기업 선정 → 사업수행 및 결과측정

지원내용

지 원 분 야	지 원 내 용
홍보물 제작 지원	홍보 브로슈어, 홈페이지 등 홍보물 제작비 지원
인증획득 지원	각종 국내외 인증 획득 경비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국내외 우수 전시회 참가비 지원
해외시장개척	현지 유력 바이어 미팅 및 수출상담 등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pomia.or.kr) 참여마당 - 주요사업 공고란을 통한 사업공고
 - 지원 분야별 신청서식 작성 후 우편 및 방문접수(Tel 279-9413)

6-5 지능형기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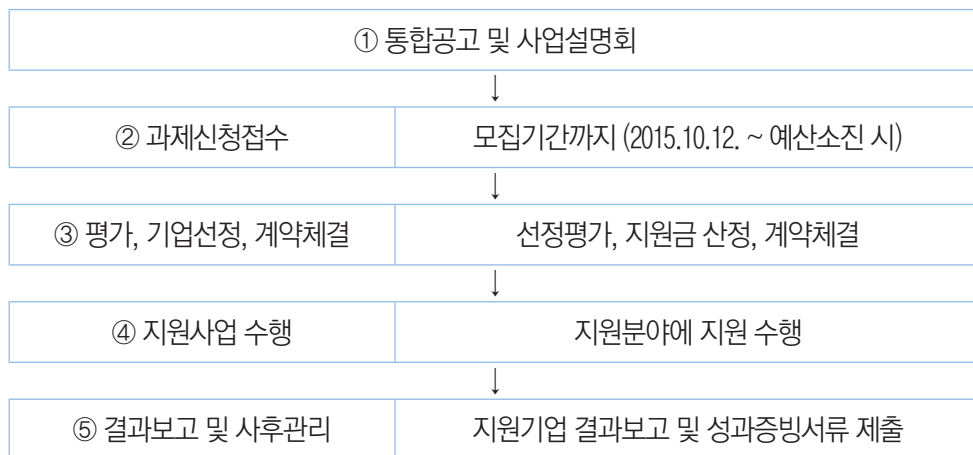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8. ~ 2018. 4.
- 총사업비 : 18.1억원
- 지원지역 : 경북, 대구, 대전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지능형기계산업 분야

- 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 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 지능형 수송기계
- 고기능성 농업용기계

지원절차



지원내용

세부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최대지원금액
상품기획지원	기술시장분석, 시장진입전략, 기술개발전략	무상
특허전략컨설팅지원	국내/해외 특허 출원/등록 컨설팅	무상
RP/시작품제작지원	전시회 출품용 RP/시작품 제작	4,000천원
제품인증지원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시험인증지원	4,600천원
해외수출지원	기업수요, 기획, 수출상담, 해외전시회 연계 지원	5,000천원
홍보물제작지원	소책자, 홈페이지제작, 홍보동영상제작 지원	3,000천원
애로요인해결	CAE 기반 기술지원(구조, 열유동)	무상

사업개요

- 신청방법 : 각 기관별 담당자 앞(e-mail 접수, 우편저부, 방문접수)
- 신청접수: 신청서 및 관련서식은 기관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www.pamia.or.kr) 박보라 연구원(bora@pomia.or.kr)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56 (Tel 279- 9474)

경제협력권육성사업(경북, 대구, 대전) 지능형기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지원사업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북, 대구, 대전지역의 지능형기계산업 관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GEPA),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 특허법인 태동에서는 상품기획, 특허출원, 시작품제작, 제품인증, 해외수출, 홍보물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사업 내용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경제협력권(경북, 대구, 대전 소재) 중 본 사업을 통해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가능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업종에 속하는 지능형 기계관련 중소기업

■ 유망품목(지원대상 업종) :

- 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 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 지능형 수송기계
- 고기능성 농업용기계

■ 지원내용 :

지원유형	세부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수행기관
상품기획지원	신규상품 기획지원	· 기술개발 & 시장진입전략 수립/경제적 타당성 분석	KISTI
특허전략 컨설팅지원	특허 전략 수립	· 국내외 특허출원을 위한 특허분석/컨설팅 및 특허 출원 지원	태동
RP/시작품제작지원	RP/시작품제작지원	·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신제품개발을 위한 RP/시작품 제작 지원	POMIA
제품인증지원	제품인증지원	·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제품의 신뢰성, 성능 인증 지원	
	시스템인증지원	·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표준화 인증지원	
	시험인증지원	·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시험 인증 지원	
에로요인해결	CAE기반 기술지도	· 신뢰성 검증/제품 설계 변경을 위한 설계 지원	GEPA (주관)
해외수출지원	기업수요맞춤 해외전시회	· 수요와 특성에 맞는 전시회 선정 및 참가지원	
	해외 기획 전시회	· 유망 해외 기획 전시회 참가를 통한 수출마케팅 지원	
	수출 상담회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지원	
	해외전시회 연계지원	· 전시회 연계 제품 수출판로 컨설팅/비즈니스 실무자 교육	
홍보물지원	홍보물 제작	· 기업의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및 동영상 제작지원	

■ 신청 : 각 기관 담당자 앞(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주관기관) 김현수 과장 054-470-8556, fergo78@daum.net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동원 팀장 053-601-5205, daegu@kisti.re.kr
-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박보라 연구원 054-279-9474, bora@pomia.or.kr
- 특허법인 태동 이종섭 과장 031-225-8833, ydark@patguide.com

GEPA 경상북도경제진흥원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omia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특허법인 태동

6-6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3년간)
- 사업주관 :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 지원대상 : 경북권 철강관련 중소·중견기업
- 사업내용 : 지역 철강기업의 부족한 연구역량을 직접 지원

세부사업 A : 기술역량 직접지원(무상)

- 방문상담형 현장애로기술컨설팅
- 현장애로기술 관련 기초 시험분석평가 지원
- 경쟁기술벤치마크/품질결함원인분석 등에 대한 심화컨설팅 지원
- 납품현장 기술지원, 전시회 홍보 공동대응 등의 기술마케팅 지원
- 연구개발과제 도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연구기획 지원
- 경북권 비R&D 사업 정보 안내 및 수혜 기획 지원
- 시장 및 기술 동향 조사 지원
- 전산해석(CAE)을 통한 최적설계 지원(구조해석, 열유동해석)

세부사업 B : 기업 R&D 역량 강화 교육(무상)

- 연구기획,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관리 등에 대한 현장 교육
- 시장/특허조사, 지적재산권, 품질관리 등 전문가 현장파견형 교육

지원절차

- 문의전화를 통한 지원요청 접수 후 연구원 방문을 통한 안내 진행
- 지원 여부 결정 후 담당 연구원(팀) 배정을 통한 지속적인 전방위 지원(지원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한 총괄지원)

6-7 사업전환지원사업

사업목적

-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함
- 근거법률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

사업개요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

사업전환의 개념

- 사업전환은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거나 사업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비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 늘리는 것

구분	사업 전환 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영위업종 사업용 자산 양도·폐기 →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28202)
 -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신청자격안내

● 신청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종 외의 업종을 운영하는 자
2.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자
3.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며,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대상이 될 것
4. 새로이 영위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정책자금 융자공고상 융자제한 대상 업종 외의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

● 신청제외대상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2. 휴 · 폐업중인 업체
3. 승인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6-7 무역조정지원사업

사업목적

-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무역조정지원 도모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 지원)
-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생산시설의 가동 및 유지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자금,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설비투자·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지원

지원대상

① 무역조정지원 (융자·컨설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구분	피해 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지원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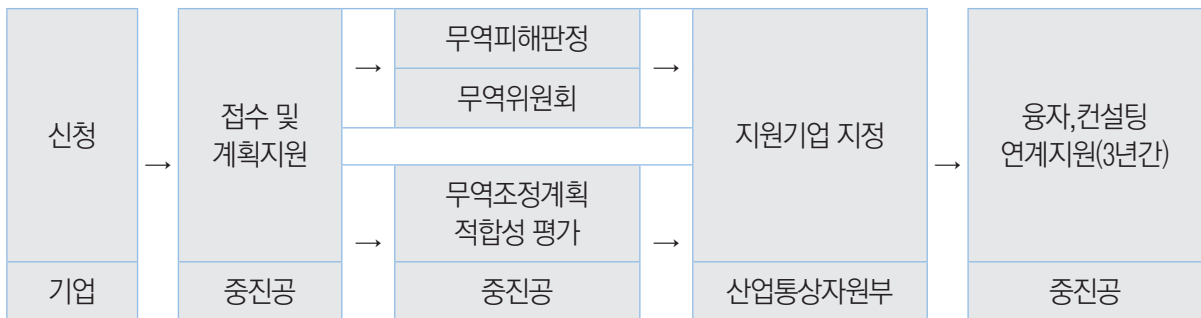
구 분	피해 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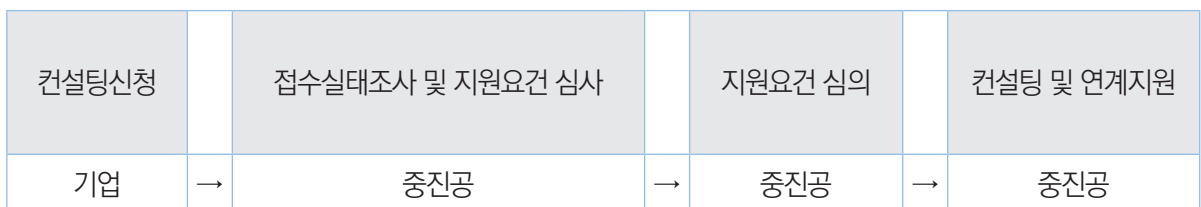
-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한 무역피해기업이 아닌 경우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업력 2년 미만 기업
- 휴 · 폐업중인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부지정 통보일 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 기업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요건무역조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내용

신청 · 접수

① 무역조정지원 (융자 · 컨설팅)



①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컨설팅)



6-9 무역조정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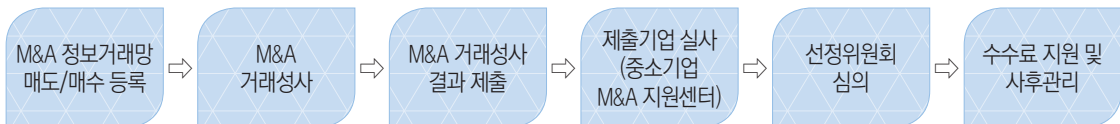
지원대상

- M&A 거래정보망에 매수/매도기업으로 등록한 기업 중, 지정된 중개기관을 통해 M&A가 성사된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 M&A성사에 필요한 기업실사(가치평가) 및 분석, 계약서 작성 및 검증 등에 소요된 수수료의 일부
 - ※ 1건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총 비용의 60% 이내)에서 지원하되, 매수/매도기업의 중개기관이 다를 경우 수수료 규모에 따라 분할 지급

신청절차



신청·접수

- M&A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 ※ 신청 시 필요한 사항을 우선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처

- M&A지원센터로 직접 방문(우편신청),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택일)

기관명 (홈페이지)	전 화	주 소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055-751-9622 055-751-9624 055-751-9626	(우)660-03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중소기업진흥공단 6층 재도약성장처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042-610-2273	(우)302-828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141 기술보증기금 3층 대전기술융합센터
(사)벤처기업협회 (www.mnair.or.kr)	02-6331-7001	(우)152-74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사)벤처기업협회 회원지원단
삼일회계법인 (www.pwc.com/kr/ko)	02-709-0461 02-709-0532	(우)140-70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4층 삼일회계법인 CF2팀 M&A지원센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ahpek.or.kr)	02-3275-1957	(우)121-7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 (도화동, 도원빌딩) M&A센터

6-10 진로제시 컨설팅사업

사업목적

-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심층진단 후 구조개선, 사업정리 및 회생절차에 대한 진로를 제시하여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및 위기극복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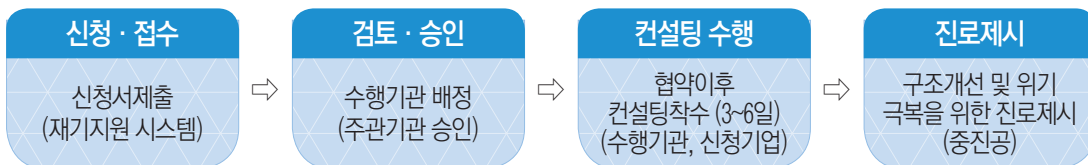
지원대상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로제시컨설팅 처방'을 받은 중소기업
 - 3년간 연속 적자, 매출급감 등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 ※ 경영위기 중소기업 : 이자보상배율 1이하 (영업이익 < 이자비용)거나 이자비용 연체 기업, 유동성위기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 진단하여 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도모
- ※ 기술사업성 분석 : 기업현황 및 업종 전망 분석,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등
- ※ 재무 분석 : 재무비율 분석, 영업현금흐름 추정 및 차입금 상환능력, (필요시)회생절차 이행가능성 분석
- ※ 전문가 : 공인회계사(법원 조사위원 경력자), 건강진단 전문가

진행절차



신청 및 접수처

-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6-11 기업회생컨설팅 사업

사업목적

-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시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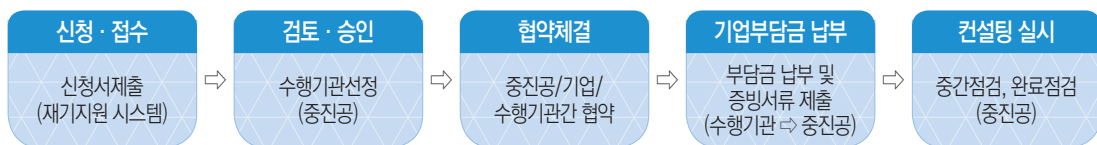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참고〉 회생 컨설팅 범위

- | | | |
|--------------|-------------|------------|
| · 게시신청서 | · 대표자심문 답변서 | · 채권목록 작성 |
| · 시부인표 작성지원 | · 관리인보고서 작성 | · 회생계획안 작성 |
| · 관계인집회 관련서류 | · 회계세무 자문 등 | |

〈유의사항〉 회생절차 수행에 따른 법원 예납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기업 자부담으로 납부해야 하며, 컨설팅 수행에 따른 회계, 법무법인 수수료 중 일부 지원

진행절차



- 수행기관 : 회계법인, 법무법인(변호사)소기업

신청·접수

-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6-12 이업종교류 사업

사업특징

- 1개 업종에 1개사로 제한해 그룹을 결성
- 기업의 경영자로 구성해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
-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의 기업으로 구성
- 회원이 자주적으로 운영
- 상부상조와 상호신뢰가 기본정신
- 진취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안목

교류유형

- 정보교환형 : 정례회, 강연회, 견학회 등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회원기업간의 경영, 기술 정보를 교환하는데 주력
- 자원협력형 : 각 회원사들이 갖고 있는 생산 · 연구 · 시험설비이용, 경영 · 기술의 Know-How 제공, 판로공유, 인재파견 등을 실시
- 융합기술개발형 : 각 회원 간 보유자원을 제공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연구함으로써 단독으로 개발할 수 없는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

활동내용

- 중소기업자 간의 자발적인 학습조직으로 월례회, 견학회, 공동과제에 대한 강습회 개최, 지식 · 기술융합화 활동으로 신기술 · 신제품 · 신서비스를 공동개발하고 공동마케팅, 공동법인 설립 등 공동사업의 추진

지원내용

- 이업종교류전문가 파견, 창립총회 비용지원
- 이업종 기술협력 멘토링 지원사업
- 지식 · 기술융합 경진대회 및 우수교류회,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 합동월례회, 임원 · 리더워크숍, 포럼, 초청간담회, 지역플라자, 국제심포지엄 개최
- 국내 · 외 교류회 간 자매결연 알선
- 전국 각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교류알선

- 지식·기술융합 센터운영(13개 지역)
- 융합기술 과제 발굴 자금지원

이업종교류활동과 기대효과

- 기업 간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형 유망과제 발굴·육성 확대
- 지식·기술융합 성과확산을 위한 코칭시스템 구축(멘토링 지원)
- 이업종 전문 기업간 지식·기술융합 활성화 인프라 구축(DB구축)
- 서로 다른 업종간의 교류를 통하여 지식·기술 융합을 하는 경제공동체 활동으로 ☑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기여

6-13 컨설팅 지원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규모

- 진단 연계형(국내전문가, 해외전문가) : 57억원

지원체계

TRACK	구 분	지 원 대 상	비 고
진단 연계형	국내전문가 컨설팅	업력·업종 제한 없음	연중 수시접수
	해외전문가 컨설팅	업력 제한 없음, 제조업 기술 분야	연중 수시접수

지원조건

TRACK	정부지원금		정부지원비율	수 행 기 간
진단 연계형	업력 7년 이상	최대 30백만원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년 (2개월/년 추가연장 가능, 1회)
	업력 7년 미만	최대 20백만원	65%	

정부지원금 산청방식 (업력 7년이상)

총사업비	비 율	최대 지원금액	산 출 방 식
3천만원 이하	30 ~ 50%	15백만원	컨설팅 협약금액 × 50%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22백만원	{15백만원 + (3천만원 초과금액 × 35%)}
5천만원 ~ 7천만원 이하		27백만원	{22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 × 25%)}
7천만원 초과		30백만원	{27백만원 + (7천만원 초과금액 × 10%)}

신청대상

- 중소기업 건강진단 및 기업진단(또는 사업전환진단)을 받은 기업 중 맞춤형연계로 “컨설팅”을 추천받은 기업
- 기존 발급된 추천서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진단이 완료된 기업 중 맞춤형연계로 컨설팅을 추천받은 기업

6-14 중소기업기술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 R&D 성공기술 및 특허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제품화 지원
- 지원규모 : 기업 당 70백만원 이내

지원대상

- R&D성공판정 기술 및 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등록 기술中 최근 6개월 이내 사업화 추진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지원금 : 협약금액의 80%이내에서 70백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협약금액의 20%를 부담(현금)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기업이 부담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선정기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용역 제공기관으로부터 시제품제작, 분석,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중진공에서 용역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
- 지원분야
 - (시)제품 성능, 품질, 신뢰성 평가
 - 국내외 인증획득, 공인기관 성적서 발급
 - 공정개선, 양산적용, 품질개선 등 기술컨설팅 수행
 - 출시제품 제작비
 - 시험분석, 성능검사, 분석료 등(기기 · 장비와 부수 기자재의 구입 용도로의 집행은 불가)
 - 시장성 조사, 제품디자인, 포장/패키지 디자인, CI · BI 개발 등 브로슈어 및 홍보물 제작 등
 -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
 - 기업, 연구소 등 외부기관 장비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단,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성공판정 기업은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 · 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및 접수처

- 신청서류를 온 · 오프라인으로 제출
 - 오프라인 : 우편제출(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평가 · 선정절차

※ 평가 · 선정 · 협약 일정 등은 신청 업체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류평가
 - 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서면으로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기업 선정
- 기술사업화 진단
 - 기술완성도와 제품 전환시 시장성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면담,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사업화를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평가하여 사업화 기획 보고서 작성 대상기업 선정
 - ※ 기술사업화 진단 100개사 → 사업화 기획 보고서 작성 30개사
- 사업화 기획
 -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 · 기술 ·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화 추진 로드맵과 세부 연계지원 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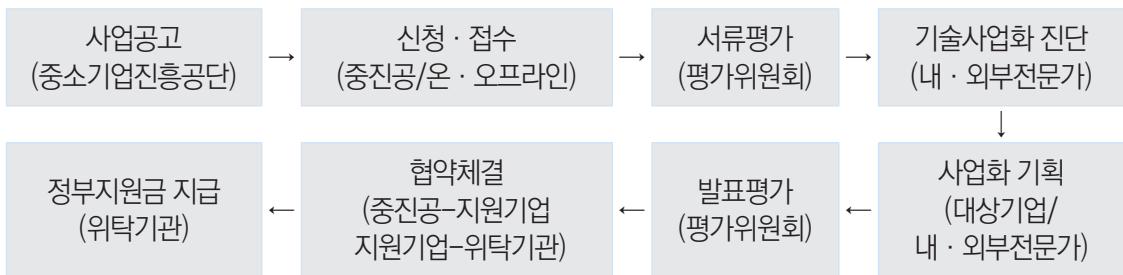
● 발표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화 기획 보고서 발표를 통해 사업화 지원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및 평가 실시(총괄책임자 발표가 원칙)
- 사업화 기획 30개사 → 사업화 지원 20개사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화 진행 정도에 따라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은 위탁기관에 지급

● 추진절차도



기타 공지사항

-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 1개 기술사업화 과제만 신청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에 따름
- 지원기업의 용역을 수행할 위탁기관은 선금금 요청 시 선금금과 이에 대한 부가세를 가산한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6-15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신청자격 및 대상

- 경북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주력산업 내 기술관련 분야로 신청가능
(본사, 공장, 기술연구소, 지점 등)

※ 경북지역 주력산업 :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모바일융합

지원절차

절 차	일정	주요내용
수혜기업 공고	3주(21일)	●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
↓		
신청서 접수	3주(21일)	●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접수 ● 각 사업별 주관, 참여기관
↓		
기업예비진단	접수 종료 후 2주 이내	● 참여제한 검토 ● 중복성, 정합성 및 적정성 검토 ● 예비진단 검토사항
↓		
선정평가	예비진단 종료 후 2주 이내	● - 지역 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3~5인 내외로 구성 ●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 서면평가
↓		
선정평가 결과통보	선정평가 종료 후 2주 이내	●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결과 공문통보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주관기관 → 신청기업
↓		
사업수행	결과통보 종료 후 사업 종료시점까지	● 선정결과 통보 후 협약체결, 사업수행
↓		
사업결과보고	~ 사업완료시	● 사업완료 후 결과 및 성과보고 ● 수혜기업 → 주관(참여)기관

지원내용및 대상

- 역량강화사업 :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특허, 인증, 기술지도, 전문가양성, 생산인력역량강화, CEO역량강화
- 사업화지원사업 : 마케팅, 컨설팅, 디자인, 전시회

신청방법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pohangtp.org) 공고를 통해 신청 가능
- 4차 공고 예정 : 2016년 2월 中

6-16 2016년 해외SW융합시장 현지화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목적

- 경북지역 소재 IT/SW 관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및 지원

사업분야[마케팅]

- 해외시장 특화정보 제공(시장 특성, 마케팅, 가격정책 등 컨설팅)
- 해외 현지채널 연결 및 바이어 비즈니스 미팅
- ※ 자격조건 : 경북지역 IT/SW 관련기업(SW활용 제조업 포함)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서류심사 → 결과통보 → 현지시장 및 기업 방문

지원내용

- 참가비, 항공비, 숙박비, 홍보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전액 지원
- ※ 통역 및 현지 체류비용 기업 부담

신청방법

- 사업확인 :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 접수기한 : 2016년 1월 15일 (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요약서(소정양식)
 - 사업자 등록증
 - 기업소개 및 제품 · 기술 소개자료 각 1부

6-17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사업

신청대상

- 과메기 생산·판매자(기업) 및 과메기를 활용한 고차가공품 생산(신규사업진출) 희망 기업

지원내용

- 인력양성 및 비R&D분야 기업지원

(단위:천원)

지원 분야	지원내용	지원프로그램	기업당 지원규모	기업부담 비율	비고
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레시피 교육	-	-	교육 및 경연대회 참가비 없음
		○마케팅 및 수출전략 교육	-	-	
		○안전 및 위생교육	-	-	
		○과메기 요리경연대회	-	-	
		○과메기 요리특강	-	-	
기업 지원	포장디자인제작	○포장디자인 제작지원	5,000	20%	
	시제품제작	○시제품제작 지원	10,000	20%	
	마케팅지원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	
		○지역축제연계지원	-	-	공동전시·홍보관운영 예정
		○신규유통채널개척지원	-	-	
	현장애로기술자문	○현장애로기술 자문지원	1,000	20%	
		○HACCP 컨설팅	8,000	20%	

※ 마케팅지원 : 마케팅에 필요한 공동부스설치비, 통역비, 홍보판넬비, 유통채널 구축비 등 지원. 단,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여비 및 체류비는 기업 자부담.

※ 지원규모 및 기업부담비율은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절차

-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협약체결)→ 지원

신청기간

- 2016년 5월 중 공고예정

6-18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

신청대상

- 지역특산물(농·수산물) 소재를 활용한 고차가공상품 생산기업

지원내용

- 비R&D분야 기업지원

지원 분야	지원내용	지원프로그램	기업당 지원규모	기업부담 비율	비 고
기업 지원	포장디자인제작	○포장디자인 제작지원	5,000	20%	*지역특산물 소재 활용 제품개발필수
	시제품제작	○시제품제작 지원			
	마케팅지원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3,500	-	*서울카페쇼 참가예정
	현장애로기술자문	○현장애로기술 자문지원	-	-	
		○전문가 초청 컨설팅	-	-	

※ 마케팅지원 : 마케팅에 필요한 공동부스 설치비, 홍보판넬비 등 지원.
단,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여비 및 체류비는 기업 자부담.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한 시제품 제작 기업에 한해 박람회 참가지원)

※ 지원규모 및 기업부담비율은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지원

신청기간

- 2016년 3월 중 공고예정

6-19 지능형기계산업글로벌경쟁력강화를 위한사업화지원사업

★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협력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산업용 섬유기계, 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지능형 수송 기계 고기능성 농업용 기계

지원내용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상품기획지원	기술시장분석, 시장진입전략, 기술개발전략	무상
특허전략컨설팅지원	국내/해외 특허 출원/등록 컨설팅	무상
RP/시작품제작지원	전시회 출품용 RP/시작품 제작	4,000천원
제품인증지원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시험인증지원	4,600천원
해외수출지원	기업수요, 기획, 수출상담, 해외전시회 연계 지원	5,000천원
홍보물제작지원	소책자, 홈페이지제작, 홍보동영상제작 지원	3,000천원
애로요인해결	CAE 기반 기술지원(구조, 열유동)	무상

신청방법

- 공고 → 과제신청접수 → 평가 → 선정·계약체결 → 지원사업 수행 →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6-20 창업 지원(창업HUB)

사업개요

- 지역 창업인프라와 네트워킹을 통한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Platform' 운영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 용
아이디어마켓 플레이스(IMP)	초기 벤처기업 아이디어를 투자자들에게 소개 · 투자 지원
벤처창업 R&D지원	원천기술을 R&D로 실용화하여 벤처창업으로 연계
유망벤처 발굴	사업화 가능 아이디어와 기술 심의 · 선정
전문가 멘토링	벤처 창업을 위한 법률, 금융, 마케팅,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진단	벤처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과 진단
시제품 제작	기술 완성도와 고객 호응도 탐색 위한 시제품 출시
벤처창업 투자	성공 가능한 벤처 기업 심의 선정, 투자지원 및 연계

센터 시설이용 지원

- 창의공작소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
- 전시실 :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의 제품홍보를 위한 상설 전시실
- 컨설팅룸 : 창업기업의 취약부분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컨설턴트 초빙으로 1:1 컨설팅 지원 공간
- 멘토링룸 : 인사, 노무, 경영, 연구개발 등 초기창업자가 필요한 내용을 전문 멘토와 상담하는 공간
- 유레카룸 :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위해 연구하고 창의적 발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
- 드림벤처 라운지 : 입주기업 및 방문자가 자유롭게 모여 협업하고 토의하는 창의공간

6-21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모집분야

- 철강/비철 및 부대 관련사업(철강/비철소재/컴퓨터/환경에너지)

신청자격

-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지원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지원내용

- 입주부담금
 - 보증금 : 100,000원/3.3㎡
 - 월 관리비 : 30,000원/3.3㎡

입주기업 지원사항

- 경영/기술/세무/법률 컨설팅, CEO교육 기회 지원
- 기술개발, 기업홍보, 판로지원
- 정부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 관련기업 및 지원기관 실무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 세미나실, 교육실 무료사용(세미나/교육시에 한정)
- 기타 기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시상담 및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신청서류: 입주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
- 입주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붙임참조
- 제출처
 -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2번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창업보육센터(791-330)
- 문의처
 - 창업보육센터 담당자(Tel 279-6468), E-mail: rbi@rist.re.kr, FAX: 054)279-6469

7. 교육 지원분야

7-1	중소기업 신지식 전문교육	155
7-2	교육훈련 지원사업	156
7-3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	157
7-4	일학습병행제	158
7-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162
7-6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사업	165
7-7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167
7-8	청년취업아카데미	169
7-9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171
7-10	포스코 중소기업 컨소시엄 전문교육	174
7-11	테크노파트너십 지원사업	175



7-1 중소기업 신지식 전문교육

추진개요

● 목적

-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교육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로 중소기업 임직원의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2. ~
- 사업내용
 - 교육대상 : 포항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등
 - 교육시간 : 기업체 상황에 맞게 편성(1일 2시간 이상)
 - 교육분야 : 경영, 품질 및 기술,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등
- 사업비 : 12,150만원
- 신청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Tel 275-2967)

7-2 교육훈련 지원사업

교육분야

- 철강소성가공, 주조 열처리 분야 등 금속일반, 연료전지, 연구장비활용, 품질관리, 생산혁신, 인증실무 등 현장수요 기술분야

교육방법

- 집체형교육 : 기업현장 수요기술 중심의 주문식교육으로 본 원 교육원에서 실시
- 방문형교육 : 현장 애로기술 맞춤형 기술교육으로서 기업 현장에서 실시
- 기술세미나 : 전문가 초청교육으로 현업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 분야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보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

지원절차

- 교육신청 → 강사 섭외 일정 조율 → 교육 실시 → 성과 측정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pomia.or.kr) 참여마당 - 교육훈련 신청란을 통해 신청
 - 현장수요기술교육 강의 개설 상담(Tel 279-9422)

7-3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 : 농협중앙회, 어업 : 수협중앙회, 건설업 : 건설협회

지원내용

- 각종 행정 신청 대행(고용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신청서 발급신청, 외국인과 근로계약 체결 등)
- 취업교육(산업안전 · 기초기능 · 한국 문화 등 교육, 건강검진 등)
-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통 · 번역 지원, 외국인 고충상담 등)

고용인원

내국인보험자수	고용가능 총인원	신규 고용인원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뿌리산업은 고용가능 총인원의 20%, 신규고용인원에서 +1명 추가로 고용 가능

※ 지방기업 및 인력 부족률이 심한 업종은 20% 추가고용 가능

고용 기간 및 국가

- 기간 : 총 4년 10개월(취업기간 3년 + 재고용 신청 시 1년10개월 연장)
- 국가(15개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7-4 일학습병행제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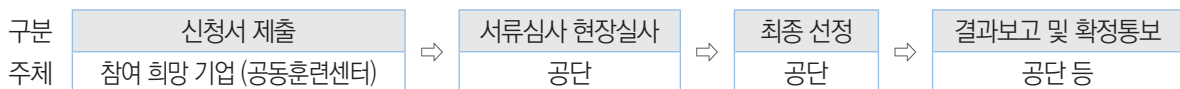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 현장(또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위)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
 - ※ 단독기업형 : 기업이 주도하여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따라 Off-JT와 OJT를 실시
 - ※ 공동훈련센터형 : 자체 Off-JT 여건이 어려운 기업들이 외부전문교육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Off-JT를 실시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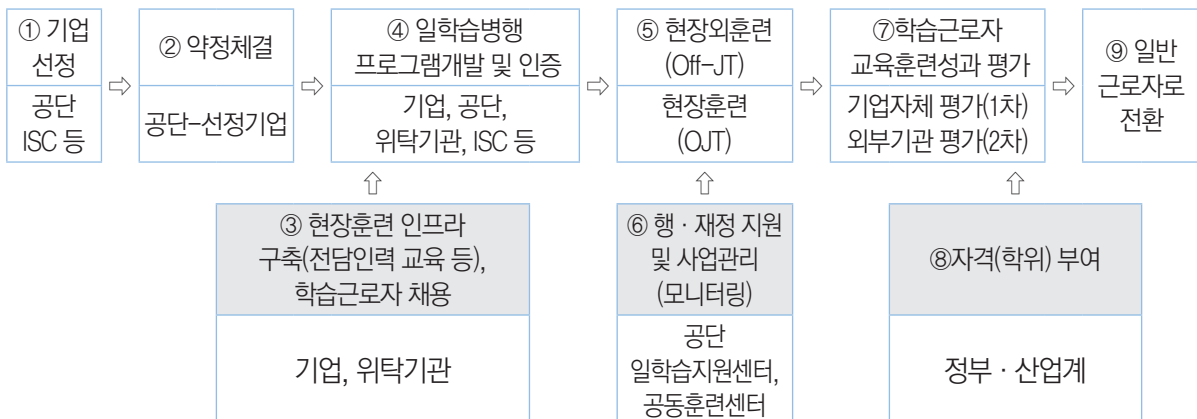
- (기업규모)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
 - ※ 단,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관계부처전담기관, 지역인자위(확산팀),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 등이 발굴, 추천한 기업과 정부가 인증한 기업군(예:테헤란 밸리 S/W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으로 예외 적용 가능
- (업종 및 직무 분야) 제한없음. 신직업자격이 개발된 분야 및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 ※ 단, 체계적 · 장기적 교육훈련이 필요 없는 단순 직무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지원절차

【 참여 기업 선정 절차 】



【 일학습병행제 시행 프로세스 】



지원내용

● 단독기업형

항 목		상시근로자 1,000인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	비 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1개(700만원), 2개(890만원), 3개(1,060만원)	● 지원안함	● 개발기간 : 2개월내외 소요 연간 훈련시간 : 300~1,000시간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 300만원	● 지원안함	●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현장훈련 (OJT) 비용		● 직종별단가×조정계수(3) ×인원×시간	● 직종별단가×조정계수(2) ×인원×시간	※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 직종별단가×조정계수(3) ×인원×시간	● 직종별단가×조정계수(3) ×인원×시간 ※ 단, 학습근로자 20인 초과분부터 조정계수 "2" 적용	
현장의 훈련 (Off-JT) 비용	기업 자체	● 직종별단가×조정계수(3) ×인원×시간	● 직종별단가×조정계수(2) ×인원×시간	※ 기업에 지급 ※ 외부위탁형의 조정계수는 사업주훈련 조정계수 참조
	외부 위탁	● (직종별단가×조정계수×인원×시간)의 5배까지 실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3배까지 정산없이 지원 ※ 단, 대학연계형(학위 연계)은 학기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급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		● 최대 월 40만원	● 지원안함	● 훈련실시기간동안 지원
기업현장 교사 수당		● 최대 연간 1,600만원 * [별표 1] 참조	● 지원안함	● 자격인증수당 월 10만원 별도
HRD 담당자 수당		● 250천원×월	● 지원안함	● 연간 300만원 한도
전담인력 양성		● 100만원 내외	● 100만원 내외	● 위탁기관 지원
숙식비		●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Off-JT를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훈련비)외에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1,040원까지 지원		● 월 276,000원 한도 ※ 기업내에서 Off-JT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 공동훈련형

항 목	상시근로자 1,000인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	비 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1개(700만원), 2개(890만원), 3개(1,060만원)	● 지원안함	● 개발기간 : 2개월내외 소요 연간 훈련시간 : 300~1,000시간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 300만원	● 지원안함	●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현장훈련 (OJT) 비용	● 직종별단가×조정계수(3) ×인원×시간	● 직종별단가×조정계수(2) ×인원×시간	※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 OJT 훈련비 10% 추가 감액 (단, 공동훈련센터가 인프라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
현장외훈련 (Off-JT) 비용	● (직종별단가×조정계수×인원×시간)의 5배까지 실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3배까지 정산없이 지원 ※ 단, 대학연계형(학위 연계)은 학기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급		※ 공동훈련센터에 개별기업 OJT 훈련비의 10% 추가 지급 (단, 공동훈련센터가 인프라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 ※ 현장외훈련의 조정계수는 사업주훈련 조정계수 참조
학습근로지원금	● 최대 월 40만원	● 지원안함	● 훈련실시기간동안 지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 최대 연간 1,600만원 * [별표 1] 참조	● 지원안함	● 자격인증수당 월 10만원 별도
HRD담당자 수당	● 250천원×월	● 지원안함	● 연간 300만원 한도
전담인력 양성	● 100만원 내외	● 100만원 내외	● 위탁기관 지원
숙식비	●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Off-JT를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훈련비)외에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1,040원까지 지원		● 월 276,000원 한도

[별표1 : 기업현장교사 수당 세부 지원 내역]

(단위 : 만원)

구 분	학습근로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이상
연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월	33.3	41.6	50	58.3	66.7	75	83.3	91.6	100	108.3	116.6	125	133.3

사업개요

- 일학습병행제 참여 희망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는 상시로 HRD-Net (www.hrd.go.kr)을 활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에 참여신청 등록(관련 요구자료 등재 포함)하여 참여신청

- (단독기업형) 참여 희망 기업이 직접 HRD-Net에 참여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접수처로 신청

※ 제출서류

- ① (필수) 기업 참여신청서(단독기업형)
- ② (필수) 사업수행계획서
- ③ (선택) 기업유형 증빙서류 (해당기업만 원본 제출)

* 기업유형 증빙서류는 혁신기업 등 상시근로자수 예외 대상 기업으로 해당 증빙서를 의미함

- ④ (선택) 학습근로자 재직증명서 (해당기업만 원본 제출)

* 기 채용된 근로자 중 학습근로자로 전환할 대상자

- (공동훈련센터형)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의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협약기업별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 · 지사 또는 산업별협의체에 일괄 제출

※ 제출서류

- ① (필수) 기업참여신청서(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용)
- ② (필수) 사업수행계획서
- ③ (필수) 공동훈련센터형 협약기업 리스트
- ④ (필수) 공동훈련센터형 기업협약서
- ⑤ (선택) 기업유형 증빙서류 (해당기업만 원본 제출)
- ⑥ (선택) 학습근로자 재직증명서 (해당기업만 원본 제출)

- ※ **산업별협의체가 공동훈련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 협약기업을 발굴 · 모집하여 신청할 경우 해당 산업별협의체에서는 동 건에 대한 접수 · 현장실사 · 1차 선정 권한이 없으며, 해당 건은 반드시 협약기업별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 · 지사에 신청해야 함.

7-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개요

-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예) ○○건설의 사업주 김공단 사장이 소속근로자 김포항의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해 '건축설계심화 과정'이라는 훈련에 참여시키는 경우, 이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실시주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실시대상 : 15세 이상 근로자(사업주는 훈련대상 비해당)
- 지원한도 :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 훈련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뿐만이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훈련도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훈련종류

훈련종류	내 용
위탁훈련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
자체훈련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등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집체훈련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인터넷 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혼합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단, 인터넷원격훈련과 우편원격훈련은 혼합훈련 불가)

지원금

● 훈련종류별 지원금 지원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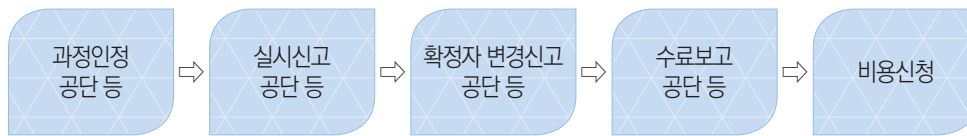
훈련방법	훈련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숙식비
집체훈련	○	○	○	○
현장훈련	○	○	X	○
원격훈련 (인터넷/원격)	○	X	X	X

● 훈련비

- 집체훈련 · 표준훈련
- 표준훈련비(직종별기준단가×훈련시간×조정계수×훈련인원)×지원비율

기업구분	훈 령 구 분	지 원 비 율
우선지원 대상기업	모든훈련(외국어과정 제외)	120%
	외국어과정	위 비율의 50%
대규모기업	단기향상	80%
	장기향상	80%
	양성훈련	80%
	비정규직대상훈련/전직훈련	100%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해당훈련	100%
	컨소시엄훈련	100%
	외국어과정	위 비율의 50%
1,000인 이상 기업	단기향상	50%
	장기향상	80%
	양성훈련	80%
	비정규직대상훈련/전직훈련	100%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해당훈련	100%
	컨소시엄훈련	100%
	외국어과정	위 비율의 50%

업무절차



업무절차

① 과정인정

- 위탁훈련(훈련개시일 7일전-공휴일 제외)
- 자체훈련(훈련개시일 5일전-공휴일 제외)

② 실시신고 : 훈련실시일 전일까지

③ 수료보고 : 훈련종료일로 부터 14일 이내

④ 비용신청 : 훈련종료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일괄 신청[소멸시효:3년]

※ 신청방법 : www.hrd.go.kr 온라인이나 팩스(054-715-3576)로 신청 후
담당부서 (054-230-3200)로 연락

● 과정인정 요건

- 훈련을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HRD-net 훈련기관으로 가입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전자서비스 이용신청 필수
- 대규모 기업 : 2일 16시간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일 8시간 이상
- 학급당 정원 60명 이내일 것
- 직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세미나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정시간에서 제외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 홈페이지 [<http://pohang.hrdkorea.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 카페 [<http://cafe.daum.net/jsm2000>]
- 관할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
 - 포항시 남구, 경주(과정인정) TEL[054-230-3229]
 - 포항시 북구, 포스코, 원자력(월성, 한수원본사) TEL[054-230-3223]
 - 영덕, 울진, 울릉, 경주, 원자력(울진)(비용지급) TEL[054-230-2231]

7-3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지원요건

- 학습조직화 사업비 중 유형별로 정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함
-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신한은행 전용통장을 개설 관리하여야 함
- 지원금은 사전(70%)·사후(30%)로 나누어 지급함으로, 사후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부담금으로 선 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받아야 함
- 사업비 집행은 일부 예외 기준을 제외하고는 전용(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시마다 지원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신규기업은 “학습조 활동” 등 4개 지원유형에 필수로 참여하여야 하며(학습인프라구축 지원 제외), 계속기업은 “외부전문가 지원 및 학습인프라구축 지원”을 제외한 3개 지원유형에 참여하여야 함

지원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기간 및 내용지원유형 : 학습조 활동 지원 등 5개 유형

유형	지원조건	지원내용
학습조 활동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한하여 지원	- 학습조 운영비 : 기업당 최대 2,400만원 - 6개월간 조당 월 30만원 한도 ※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 ※ 강사비, 수강료, 교재구입비, 인쇄비, 재료비 등

유형	지원조건	지원내용
학습조 활동	• 학습조직화 분위기 조성, 사업주의 학습조직화 관심 유도, 근로자 참여 독려, 학습조 지원 등을 위하여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비를 지원하고, 학습리더에게는 활동수당 지원	•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공단 주관교육에 한함) • 학습리더 활동수당(기업당 1인) : 기업이 학습리더에게 지급한 활동수당의 100분의 70 지원(신규 및 계속기업 : 월 20만원 한도) ※ 학습조 운영기간만 지원
우수 학습활동	• 학습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보상(지식제안 우수자,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및 각종 경진대회 포상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공단주관 경진대회 ※ 전국(지방) 학습활동 경진대회결과 입상기업 포상(400만원 한도) - 기업주관 경진대회 : 기업당 600만원 한도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결과 우수학습조 포상, 지식제안 우수자 포상,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 : 신규기업은 200만원 한도, 계속기업은 400만원 한도
학습 네트워크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 하는 기업들이 학습 노하우 ·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 지원	• 기업당 100만원 한도 : 컨설팅비,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 운영비, 우수기관 현장방문 운영비
외부 전문가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조직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이나 CEO, HRD 담당자 등에 대해 동기부여, 문제해결, 피드백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지원(지도)을 받을 경우 지원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지원 ※ 지원기업은 지원금액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부담(기업부담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당해년도 1월 중순 ~ 2월 초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선 정 :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사업공고 : 당해년도 12월에 다음년도 사업내용을 중앙일간지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접 수 처 : 경북동부지사 지역일학습지원센터(Tel 054-230-3222)

7-7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목적

- 정부가 설정한 인적자원개발·관리에 대한 심사기준을 달성한 기업을 HRD 우수기관으로 인증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공공부문을 제외한 전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 ※ 공공부문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 보좌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 ☒ 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해당연도 1사분기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인증 심사

- 1차(서류심사) : 서류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심사 대상기업 선정
- 2차(현장심사) : 현장심사단(2-4인 이내)을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인증심사기준〉

부 문	영 역	항 목
인적자원관리	기획인프라	인사계획, 인프라구축
	활용	채용, 직원관리
	평가보상	성과평가, 승진보상
인적자원개발	기획인프라	HRD기획, 인프라구축, 인적자원개발 투자
	운영	학습조직화, 교육 프로그램, 경력개발
	결과	결과 및 피드백, 기여도

※ 현장심사시 고용창출 기업 및 마이스터고 협약체결 기업에, 특성화고 협약체결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가족친화 인증기업 가점 부여

- 인증취득 기준 : 총 1,000점(인적자원관리 400점, 인적자원개발 6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 취득한 기관을 인증심의 대상으로 선정
- 인증 결정 : 700점 이상 점수 취득한 기관 대상 중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여부 최종 결정

인증 부여

- 인증주체 :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4개 정부부처 공동명의
- 인증결과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인증기관 지원정책

- 3년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 인증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국내 및 해외연수) 교육 지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 5점 부여(중소기업청)
-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면제
 - ※ 단,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처분사실이 없어야 함

7-7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목적

-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사업주단체”가 주도가 되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를 취업으로 연계 지원
- ※ 취업 희망 청년이 졸업후 우량기업으로 단절없이 이동하도록 하는「가교역할」프로그램 필요 → 청년취업 Academy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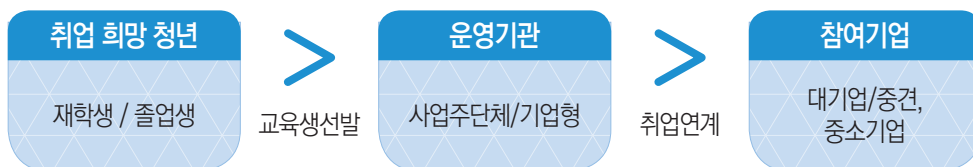
지원대상

- 대학(전문대포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아카데미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자

구 분		지 원 대 상	비 고
일반(창직)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로서,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	졸업(예정)자 50%이상 구성 의무
인문계 특화과정	장기	* 창직과정의 경우 재학생 참여 가능	인문 · 사회(경제 · 경영제외) · 예체능계열 전공자 50% 이상 구성 의무 * 장기과정은 졸업(예정)자 50% 이상 구성
	단기	재학생 : (4년제) 2~3년, (2년제) 1학년 2학기~	

운영구조

- 기업, 사업주단체가 주도하고 대학이 협력하여, 취업희망청년들을 교육하고 참여기업에 연계시키는 구조로 운영



포항, 경주지역 지역특화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운영기관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 현장실무형 인재 총 115명 양성
- 지역 대학과 협력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

교육과정명	교육인원	훈련실시시기	교육기관명
원자력에너지 · 기계설계	30명	3. 2 ~ 11. 30	동국대학교
호텔외식산업맞춤형	30명	3. 2 ~ 11. 30	선린대학교
외식산업(MICE)	25명	3. 2 ~ 11. 30	위덕대학교
기계산업맞춤형	30명	3. 2 ~ 11. 30	포항대학교

7-9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핵심훈련과정을 선정하고, 훈련 기회와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월 ~ 11월
- 신청방법 : 훈련기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직접 신청
- 지원내용 : 수료인원에 대한 훈련비를 별도의 납부 절차 없이 훈련기관에 직접 지원
- ※ 지원한도 : 개인당 연2회 수강 가능(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3회까지 수강 가능). 단 동일과정은 1회에 한함. 기업당 연 참여횟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까지만 참여 가능(단, 연 최대 50회)
- 우수훈련과정 개념
 -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훈련과정
 - 근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훈련과정
 - 사업장 내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훈련과정
 - 사업주의 경영패러다임 전환 및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훈련과정
 - 중소기업 실정에 맞고 실질적 업무성으로 연계될 수 있는 훈련과정

〈 우수 훈련과정 영역별 개요 〉

영역	세부내용
경영일반	경영전략에서 유통, 물류, 무역 나아가 영업 및 마케팅까지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업무역량을 배양
회계실무	경영관리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기업의 재무회계와 세무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
인적자원관리	급속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기업의 직무가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인사·조직관리 분야의 핵심직무 및 관리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경력개발·리더십	조직의 경쟁력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의 지식이나 업무서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변화를 유도하고,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 및 자기관리 역량 제고
생산관리·품질관리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을 능률화하고 생산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노하우 및 관리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생산과 품질의 체계화 방안 마련을 통하여 생산혁신 및 품질경영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배양
기술경영	기술과 경영의 융합 과정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기술의 기획, 개발, 관리, 가치상승 등을 위한 체계적 과정 습득을 통해 조직의 전략과 운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업무능력 배양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 2016년 포항·경주지역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인정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훈련기관명	훈련영역	훈련과정명	문의처
중앙경제 HR교육원	인적자원관리	1. 케이스와 동영상으로 배우는 채용에서 퇴직까지 중소기업 노무관리 완전정복	정병열 02-2231-7791~2 http://www.ehredu.co.kr
		2. 실무에 적용하기 쉬운 엑셀을 활용한 중소기업 임금관리 과정	
아이파 경영학원	회계실무	1. 중소기업 절세관리를 위한 테마별 세금 설계 과정	어명규 02-522-8273 http://sbiz.aifabiz.co.kr
		2. 조사판례 쟁점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절세전략 과정	
		3. 세무조사 사례중심의 중소기업 세무 문제해결 과정	
(주)씨에프오 평생교육원	회계실무	1. 중소기업 인건비의 세무관리와 세무조사대응전략 마스터	오택빈 02-501-2322 http://cfoi.kr
		2. 사례별 실제증빙을 통한 Core-Point 지출증빙과 부가가치세의 세무관리	

훈련기관명	훈련영역	훈련과정명	문 의 처
한국표준협회	생산관리 · 품질관리	1. 분석적 사고기법을 접목한 융합형 문제해결	이광석 02-2624-0205 http://free.ksa.or.kr
		2. 실습으로 쉽게 배우는 공정변수 최적화	
		3. 불량제로 달성을 위한 제조 설비 관리 노하우	박영순 02-2624-0187 http://free.ksa.or.kr
		4. 중소기업 휴먼 에러 제로화를 통한 무결점 현장 만들기	천정수 02-2624-0182 http://free.ksa.or.kr
		5. KS Q 8001 인증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실무	안경식 054-278-9661 http://free.ksa.or.kr
(주)드림힐	생산관리 · 품질관리	1. 안정적 4M관리를 통한 고품질 공장만들기	박현정 02-6285-2011 http://www.drhill.co.kr
	기술경영	2. 고객사 개발구매 요구를 충족하는 사전 제품품질 확보 실무	

※ 훈련실시 세부 일정은 훈련기관 홈페이지 공고 확인

7-10 포스코 중소기업 컨소시엄 전문교육

컨소시엄 소개

- 대기업의 축적된 교육 인프라 (강사, 장비, 교육장 등)를 활용하여 컨소시엄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비원 사업
- '05년부터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여 포스코 외주/공급사 직원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지원
 - '05 ~ '15년 교육인원 누계: 393,032명

교육 개요

- 교육대상: 포스코 컨소시엄 회원사로 가입된 중소기업의 재직 근로자
- '16년 교육과정(포함 기준)

향상과정

- 교육과정 : 리더십, 기술(금속/기계/전기/계측), 혁신/품지분야 집합 57과정, e러닝 34과정
- 교육기간 : (집합) 8~40hr과정, (e러닝) 8~20hr과정

양성과정

- 교육과정 : 외주사 채용예정자 양성학과, QQR마스터 양성학과, 품질마스터 양성학과 등 3과정
- 교육기간 : 1~3개월 과정

※ 회원사별 20명 인원 충족시 맞춤형 교육지원 가능

- 신청방법: 포스코 컨소시엄 홈페이지(www.educs.posco.co.kr)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교육과정 연간일정 보기 → 과정선택 후 수강신청
- 교육장소: 포스코 인재창조원(지곡동 소재)

7-11 테크노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분야

- 기계/금속, 전기/전자, 계측/제어, 환경/에너지 등

신청자격

- 포스코 그룹 거래 1~3차 중소협력기업, 포항, 순천, 광양 및 경인지역 상공회의소 등록기업 등

지원절차

- 1차: 참가신청서 제출 → 신청기업 심사
- 2차: 기술지원단 구성(심사 통과기업에 한함) → 협약체결 → 기술지원 활동

지원내용

- 현장진단, 기술자문, 기술교육 등 기술컨설팅
- 보유 연구설비 활용한 시험분석 지원

지원방법

- 각 중소기업 니즈에 맞는 기술지원단 구성
- 월 1회 해당기업 방문 및 1:1 맞춤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및 인터넷 접수
- 신청서류: 테크노파트너십 사업참가 신청서 제출
- 제출처
 -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2번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기술실용화그룹(791-330)
- 문 의 처
 - 테크노파트너십 담당자(Tel 279-6236), 시험분석 의뢰(Tel 279-6950) E-mail : smartkimc@rist.re.kr, FAX : 054)279-6899



8. 인력지원 분야

8-1	포항시 청년창업 보육지원센터 운영	179
8-2	포항시 중소기업인턴 지원사업	180
8-3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 지원사업	181
8-4	고용노동부 장년취업인턴 지원사업	182
8-5	고용촉진 지원금	183
8-6	고용조정 지원금	184
8-7	고령자 관련 지원금	185
8-8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 지원금	186
8-9	고용창출 지원사업	187
8-10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88
8-11	3D프린팅 인력양성 지원사업	189



8-1 포항시 청년창업 보육지원센터 운영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력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015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6. ~ 2017. 1.
- 사업비 : 450,000천원(도 135,000, 시 315,000)
- 사업량 : 청년창업가 45명 육성
- 운영기관 :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23명),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22명)

● 창업보육센터 현황

구분	지정일	입주업체	고용인원	비고
계	3개 센터	44	136	• 특허등록 5, 출원 30 • 상표등록 1, 출원 3 • 실용실안 등록 1
포항공대	'99. 2.27	12	78	• '10년 경북도 우수기관 • '10년 창업대전 창업 지원기관 중기청장상 수상 • '05~'09 중기청 최우수 기관 • '09 경북도 우수기관 • 특허등록 4, 특허출원 8, 상표등록 1
한동대	'99. 8. 5	24	45	• '07년 경북도 우수기관 • '10년 창업진흥원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주관기관 선정 • '10년 포항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수탁사업 선정 • '14년 경북도 우수기관 • 특허등록 4, 특허등록 2, 상표등록 3
포항대	'00. 5. 1	15	22	• '03~'10 중기청 우수기관 • '09~'10 경북도 우수기관 • '10~'14 포항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수탁사업 선정 • 상표등록 1, 디자인 등록 1, 특허출원 1

8-2 포항시 중소기업인턴 지원사업

지원내용

- 실시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인턴고용지원약정 체결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인턴참여자
 -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대상(전 연령 참여 가능)

자격요건

- 채용한도 : 인턴고용지원약정 체결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채용한도를 산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 이내

고용촉진 지원금

- 인턴기간 2개월 : 월 70만원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 280만원 일시 지원
- ※ 2016년 포항시 3억5천만원 지원

8-3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인턴 지원사업

지원내용

- 실시기업
 - 인턴지원기간 : 3개월
 - 인턴지원금액 : 월 최대 60만원(180만원)
 - 정규직전환지원 : 6개월간 매월 65만원 추가 지원(390만원)
 - 채용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 이내
 - 인턴고용지원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인턴참여자
 - 취업지원금
 - 제조업 생산현장에 취업한 자에게 300만원
 - 그 외 직종 종사자 180만원 지급

자격요건

- 실시기업
 - 고용보험상“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신청일 당시 피보험 고용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다만, 제조업인 대기업이 고졸 이하를 채용하는 경우 가능
 - 인턴약정 체결 시 기본급 월 128만원 이상 지급 사업장
- 인턴참여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
 -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청년실업자
 - 제외대상: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자
 - ※피보험 경력기간 적용제외대상

8-4 고용노동부 장년 취업인턴 지원사업

지원내용

● 실시기업

- 인턴지원기간 : 3개월
- 인턴지원금액 : 월 최대 60만원(180만원)
- 정규직전환지원 : 6개월간 매월 65만원 추가지원(390만원)
- 채용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 이내
- 인턴고용지원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자격요건

● 실시기업

- 고용보험상“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신청일 당시 피보험 고용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인턴약정 체결 시 기본급 월 128만원 이상 지급 사업장
- 제외대상 : 고령자 고용비율 상위 3개 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인턴참여자

-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자
- 제외대상: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등

8-5 고용촉진 지원금

사업개요

-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지원요건

-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3개월 이상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수준

- 월통상임금 120만원 미만 근로자 : 연간 600만원(3개월 150만원)
- 월통상임금 120 ~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연간 720만원(3개월 180만원)
- 월통상임금 130 ~ 140만원 미만 근로자 : 연간 780만원(3개월 180만원)
- 월통상임금 140 ~ 150만원 미만 근로자 : 연간 840만원(3개월 210만원)
- 월통상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 : 연간 900만원(3개월 225만원)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채용 3개월 후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구비서류 등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이체증명서 각 1부

8-6 고용조정 지원금

사업개요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 휴업,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지원대상

- 일시 휴업, 직업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지원수준

- 휴업 :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휴업률 50%미만 1/2, 휴업률 50%이상 2/3)
- 휴직 : 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지원
- 훈련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 및 훈련비 지원
(대규모기업 휴업률 50%미만 2/3, 휴업률 50%이상 3/4)

신청방법

- 휴업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등

- 지원금 신청서 및 각 고용유지조치와 관련된 증빙서류

8-7 고령자 관련 지원금

사업개요

-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지원대상

- 정년연장 지원금 :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정년퇴직재고용 지원금 :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 정년 미 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고령자를 업종별지원고용률(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수준

- 정년연장 지원금 : 정년 연장 기간에 따라 1년 ~ 2년간 월 30만원
-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 재고용기간에 따라 6개월 ~ 1년간 월 30만원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 지원고용률 초과 1인당 분기별 18만원

신청방법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등

- 지원금 신청서 및 각 지원금 관련 구비서류

8-8 임신 · 출산여성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개요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 보호를 도모하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완화 및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

지원대상

-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형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등을 허용, 휴직 등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 휴직 등 종료 후 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임신 · 출산 후 계속고용형 :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로서 산전 후(유.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 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지원수준

-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형
 - 육아휴직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대체인력 1인당 월6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
- 임신 · 출산 후 계속 고용형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6개월간 매월 40만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12개월간 처음 6개월 월 40만원, 그 후에 6개월 월 80만원

신청방법

- 각 지원금에 따라 지원금 신청기간에 사업주가 신청

구비서류 등

- 지원금 신청서 및 각 지원금 관련 구비서류

8-9 고용창출 지원사업

사업개요

-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 개선, 새로운 시간제 직무의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수 준
일자리 함께하기지원	• 정기적인 교육훈련, 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도입. 확대하여 빈 일자리에 고용을 늘린 경우	•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단위 2년간 4차로 구분하여 각각 270만원 (비제조업 1년간 4차로 구분하여 각각 180만원) 지급
고용환경개선 용자지원	• 2016.0101. 광역자치단체(대구시, 경상북도)에서 시행 ※ 외부위탁기관: 대구디자인센터, 영영자총협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 지원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 → 승인 → 사업 진행 →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등

- 지원금 신청서 및 각 지원금 관련 구비서류

8-10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업개요

- 근무체계 개편, 직무개발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주 15~30시간)에 새로이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전환: 고용기간 6개월 이상인 전일제 근로자(전환대상 근로자)가 필요(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취업규칙 개정, 인사노무규정 신설 등)하여 운영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 신규창출: 실업자를 시간선택제로 새로 채용한 사업주
- 근로조건개선: 고용기간 6개월 이상인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

지원요건

- 미이행시 승인 취소 및 부지급 등 불이익 있음
- 전자적 장비(지문인식기 등) 도입 이행
- 사업계획서 및 승인받는 내용(해당직무, 근무시간대, 임금, 인원 등)대로만 이행
- 시간선택제 전환: 전환장려금(월12~20만원)+간접노무비(월2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 근로조건개선: 임금상승분의 70%(단,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은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간접노무비(월10만원)
- 신규창출: 임금의 1/2(최저임금 초과율 및 기업규모별 한도 상이), 간접노무비(월10만원)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 → 승인 → 사업 진행 →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등

- 지원금 신청서 및 각 지원금 관련 구비서류

8-11 3D프린팅 인력양성 지원 사업

사업목적

- 3D프린팅 예비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인력 인프라 구축 및 예비창업자 육성
- 재직자에 대한 3D프린팅 전문인력 교육으로 지역 내 기업에 3D프린팅 산업 확대 추진

지원절차

-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문 신청 서류 작성 후 (재)포항테크노파크 제출

지원내용

- 3D프린팅 예비전문인력(마스터) 양성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지역 마이스터고, 폴리텍 대학 등 예비전문인력(학생)
- 3D프린팅 재직자(기술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재직자

신청방법

-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포항나노융합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기관단체별 중소기업지원시책

포항시 일반현황

I

포항시 산업단지 일반현황

II

중소기업 애로지원시책

III

IV

중소기업지원 유관 기관단체 현황

V



Ⅳ. 기관단체별 중소기업지원시책

순번	기관단체명	지 원 시 책	지원분야	PAGE
1	포항시	• 기업애로지원단 운영	기업애로	15
		• 기업애로상담관 운영	기업애로	16
		• 포항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금융	25
		•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금융	26
		• 포항시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및 보조금지원	금융	28
		•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자원	금융	29
		• 포항시 청년창업 보육지원센터 운영	인력	179
2	포항상공회의소	• 포항시 수출지원센터 운영	판로	105
		• 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판로	106
		•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인턴 지원사업	인력	181
		• 고용노동부 장년 취업인턴 지원사업	인력	182
3	경북동부경영자협회	• 중소기업 인터넷 마케팅 지원	마케팅	126
		• 포항시 중소기업인턴 지원사업	인력	180
		•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인턴 지원사업	인력	181
		• 고용노동부 장년 취업인턴 지원사업	인력	182
4	포항금속소재 산업진흥원	• 기술지원사업	기술	84
		• 마케팅활성화사업	마케팅	128
		• 지능형기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	마케팅	129
		• 경북동해안 철강밸트 경쟁력 강화사업	마케팅	132
		• 교육훈련 지원사업	교육	156
5	포항가속기연구소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기술	85
		• 산업기술 활성화 지원	기술	87
6	중소기업중앙회	• 각종 애로신고센터 운영	기업애로	18
		•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금융	30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금융	31
		• 기업보증공제	금융	32
		• 파란우산공제 (중소기업손해공제사업)	금융	33
		• 중소기업 PL단체보험 가입지원	금융	34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	판로	107
		• 대구기업명품관 운영	판로	108
		•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지원	판로	110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	교육	157
7	경북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금융	35
8	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원	금융	41
9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원	금융	43

순번	기관단체명	지 원 시 책	지원분야	PAGE
10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지원자금 (공통사항)	금융	48
		• 창업기업 자금지원	금융	50
		• 재창업 자금지원	금융	52
		• 구조개선 전용 자금지원	금융	54
		• 사업전환 자금지원	금융	56
		• 무역조정 자금지원	금융	57
		•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지원	금융	58
		• 신성장기반 자금지원	금융	59
		• 협동화사업 자금지원	금융	62
		• 협업사업 자금지원	금융	64
		• 긴급경영안정 자금지원	금융	65
		• 투융자복합금융 지원자금	금융	68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금융	70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금융	71
		• 수출인큐베이터	금융	73
		•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판로	111
		•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판로	112
		•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사업	판로	113
		•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판로	114
		• FTA / 수출컨설팅	판로	115
		• 사업전환 지원사업	마케팅	55
		• 무역조정 지원사업	마케팅	135
		• M&A 지원사업	마케팅	137
		• 진로제시 컨설팅 사업	마케팅	138
		• 기업회생 컨설팅 사업	마케팅	139
		• 이업종교류 사업	마케팅	140
		• 컨설팅 지원	마케팅	142
		• 중소기업기술화 지원사업	마케팅	146
1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일학습 병행제	교육	158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육	162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교육	165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교육	167
		•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	169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교육	171
12	고용노동부 고용센타	• 고용촉진 지원금	인력	183
		• 고용조정 지원금	인력	184
		• 고령자 관련 지원금	인력	185
		•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인력	186
		• 고용창출 지원사업	인력	187
		•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인력	188

순번	기관단체명	지 원 시 책	지원분야	PAGE
13	포항테크노파크	• ISO인증획득 지원사업	기술	88
		•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기술	89
		• 기술이전 · 사업화 지원사업	기술	90
		• 2016 포항시 인증획득 지원사업	기술	91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기술	92
		• ‘경북 SW 융합클러스터’ 글로벌급 R&D기술개발사업	기술	93
		• ‘경북 SW 융합클러스터’ 스타급 벤처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기술	94
		• 2016년 SW 품질강화 사업	기술	95
		•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마케팅	146
		• 2016년 해외 SW 융합시장 현지화 컨설팅 지원사업	마케팅	147
		•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 사업	마케팅	148
		•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	마케팅	149
		• 3D프린팅 인력양성 지원사업	인력	189
14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애로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업애로	19
		• 더많은일자리, 더좋은일자리 적극창출	기업애로	21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금융	27
		• 자금지원	금융	75
		• 국내판로 지원	판로	117
		• 해외판로 지원	판로	119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개발 지원	마케팅	125
		• 지능형 기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	마케팅	129
		• 중소기업 신지식 전문교육	교육	155
15	포항 창조경제센터	• 강소기업 육성 기술지원단 운영	기술	83
		• 강소기업 육성지원	기술	97
		• 창업지원 (창업HUB)	마케팅	151
16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기술	98
		• 경북생태산업단지 (EIP) 구축사업	기술	100
17	나노융합기술원	• 나노융합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	101
		•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기술	102
18	포스코인재창조원	• 포스코 중소기업 컨소시엄 전문교육	교육	174
19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마케팅	152
		• 테크노파트너십 지원사업	교육	175
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포항시 1기업 1핵심기술 정보제공 지원	마케팅	126



포항시 일반현황

I

포항시 산업단지 일반현황

II

중소기업 애로지원시책

III

기관단체별 중소기업지원시책

IV

중소기업지원 유관 기관단체 현황

V



V. 중소기업지원 유관 기관단체 현황

단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홈 페이지	비고
		전 화	FAX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053-524-2110	524-2117	www.kbiz.or.kr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동구 동대구로489 대구무역회관 5층	053-753-7531~3	754-7530	www.dg.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대구지점)	동구 동대구로489 대구무역회관 11층	053-754-1021	754-1020	www.koreaexim.go.kr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동구 동대구로489 대구무역회관 10층	1588-3884	053-256-2684	www.ksure.or.kr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서구 국채보상로136 (중리동1083)	053-560-6600	554-6326	www.textile.or.kr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	북구 유통단지90 (EXCO 411호)	053-601-5205~9	601-5210	www.kisti.re.kr	
한국생산성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북구 유통단지90 (EXCO 4층)	053-601-5161~2	601-5163	daegu.kpc.or.kr	
대구경북첨단 벤처기업연합회	동구 신천3동95 (대구벤처센터빌딩 3층)	053-742-1775	742-1776	www.tvba.or.kr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구미시 수출대로127	070-8895-7706	0502-286-0618	www.kicox.or.kr	
한국중소기업협의회	영등포7가29-101	02-6000-2233	6008-3444	www.kcmi.or.kr	
RIST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남구 청암로67	279-6333	279-6099	www.rist.re.kr	
포항가속기연구소	남구 지곡로127번길80	279-1050	279-1500	pal.postech.ac.kr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남구 지곡로39	279-0427	279-0429	www.kiro.re.kr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시청로 8 대신증권 2층	278-5142~3	278-5144	www.geea.or.kr	
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북구 중흥로221 (죽도동)	280-3000 (280-3056)	0505-130-3005	www.work.go.kr	

단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홈 페이지	비 고
		전 화	FAX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새천년대로430 (대잠동)	271-6700	270-2709	www.moel.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사)	남구 지곡로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223-2040(2059)	223-2049	www.sbc.or.kr	
포항테크노파크	남구 지곡로394	223-2114	223-2220	www.pohangtp.org	
포항상공회의소	포스코대로333 (상도동10-2)	274-2233~6	283-1823	www.pohangcci.or.kr	
POMIA (포항금속 소재산업진흥원)	남구 지곡로56	279-9415(9444)	279-9419	www.pomia.or.kr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포스코대로402 (대도동124-4)	271-2014	271-2019	www.kosha.or.kr	
한국은행 (포항본부)	북구 중흥로180 (죽도동)	289-2800	289-2929	www.bok.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	북구 법원로140번길9	230-3231 230-3225	715-3576	www.pohang.hrdkorea.or.kr	
경북지식재산센터	포스코대로333 (상공회의소2층)	274-5533	274-7227	www.ripcc.org/pohang	
대구경북 중소기업청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122-11	053-626-2601	053-626-2602	www.smba.go.kr/daegu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희망대로859 (해도동232-11)	275-2966	275-2968	www.gepa.kr	
경북신용보증재단 (동부지점)	희망대로859(해도동 232-11)경제진흥원 2층	283-2730	283-2704	www.gbsimbo.co.kr	
기술보증기금 (포항지점)	포스코대로369 (기업은행3층)	271-4900	271-4970	www.kibo.or.kr	
신용보증기금 (포항지점)	포스코대로333 (상공회의소3층)	1588-6565 (271-6425)	0505-071-4217 (272-1806)	www.kodit.co.kr	
나노융합기술원	남구 청암로77	279-0203 279-0256	279-0249	www.nano.or.kr	
포스코인재창조원	남구 지곡로120	211-5000	032-200-0200	e-campus.posco.co.kr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남구 지곡로 80	221-3800	221-0399	ccei.creativekorea.or.kr	